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대전지역 위기청소년의 근로 경험을 비탕으로 안정적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책임연구원

이계석(대전광역시이동일시청소년쉼터 소장)

공동연구원

이순복(대전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소장)

이건용(대전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상담원)

※ 본 연구는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연구로써
본 연구결과는 사회서비스원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3. 연구방법	4
제2장 청소년 일자리 및 근로환경 관련 선행연구	7
제1절 정책 개선 방안	9
1. 구직환경 개선	9
2. 근로환경 개선	10
3. 노동인권 개선	10
제2절 청소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규의 제정 및 개선	11
제3절 청소년의 근로지원 체계 구축과 노동인권 의식 확대	13
제4절 선행연구 분석 종합	13
제3장 대전지역 위기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분석	15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17
제2절 조사대상자의 아르바이트 현황	22
제3절 조사대상자의 구직 시 어려움	37
제4절 조사대상자의 근로 정보(지식)관련	44
제5절 조사대상자의 최근 근로 경험	50
제6절 부당대우 경험	55
제7절 부당대우에 대한 대처	64
제8절 노동관련교육이 주관적 노동지식 인식 수준의 미치는 영향	69
제9절 소결	74
제4장 대전지역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 집담회	77
제1절 집담회 개요	79
제2절 주요 논의 주제	79
제5장 결론	83
참고문헌	88
부록: 설문지	89

표/그림 차례

<표2- 1> 선행연구 속에 나타난 청소년의 안정적 일 지원체계 구축 방안	14
<표3- 1> 응답자 성별	17
<표3- 2> 응답자 연령	18
<표3- 3> 응답자 학력	19
<표3- 4> 현재 가출여부	20
<표3- 5> 최초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연령	21
<표3- 6> 일(아르바이트) 장소(복수응답, 100% 비율 분석)	23
<표3- 7> 원하는 일(아르바이트) 장소	25
<표3- 8> 실제 일한 곳과 일하고 싶은 곳 비교	27
<표3- 9> 구직방법	29
<표3-10> 일(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주된 이유	30
<표3-11> 구직 시 고려사항	31
<표3-12> 불법이나 탈법적인 일(아르바이트) 경험	32
<표3-13> 경제적 상황 1 : 나는 현재 갚아야 할 빚이 있다	33
<표3-14> 경제적 상황 2 : 나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다	34
<표3-15> 경제적 상황 3 : 나는 현재 신용불량이거나 과거에 신용불량 경험이 있다 ..	36
<표3-16> 구직 시 어려움	37
<표3-17> 구직 시 어려움 : 동의서 제출	39
<표3-18> 구직 시 어려움 : 낮은 보수	39
<표3-19> 구직 시 어려움 : 학력부족	40
<표3-20> 구직 시 어려움 : 직장 경험의 부족	40
<표3-21> 구직 시 어려움 : 근로 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음	41
<표3-22> 구직 시 어려움 : 기술, 자격의 부족	41
<표3-23> 구직 시 어려움 : 건강상태	42
<표3-24> 구직 시 어려움 : 적성파악의 부족	42
<표3-25> 구직 시 어려움 : 취업정보의 부족	43
<표3-26> 구직 시 어려움 : 기타 응답	43
<표3-27> 근로정보(지식)관련	44
<표3-28> 근로정보(지식)관련_응답자별 맞춘 개수	44
<표3-29> 근로정보(지식관련)_서류	45
<표3-30> 근로정보(지식관련)_업종	45
<표3-31> 근로정보(지식관련)_근로시간	46

<표3-32> 근로정보(지식관련)_주휴일	46
<표3-33> 근로정보(지식관련)_퇴직금	47
<표3-34> 근로정보(지식관련)_업무 준비시간	47
<표3-35> 근로정보(지식관련)_최저시급	48
<표3-36> 근로정보(지식관련)_주휴수당	48
<표3-37> 근로정보(지식관련)_산재보상	49
<표3-38> 근로정보(지식관련)_부당노동행위 신고	49
<표3-39> 최근 근로 경험_근로형태	50
<표3-40> 최근 근로 경험_일일 평균 근로시간	50
<표3-41> 최근 근로 경험_만 18세 미만 응답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	51
<표3-42> 최근 근로 경험_일주일 총 근로시간	52
<표3-43> 최근 근로 경험_만18세 미만 응답자 일주일 총 근로시간	52
<표3-44> 최근 근로 경험_평균 근무기간	53
<표3-45> 최근 근로 경험_시간당 급여	53
<표3-46> 최근 근로 경험_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시간당 임금	54
<표3-47> 최근 근로 경험_월 평균 소득금액(월급)	54
<표3-48> 최근 근로 경험_월 정적 생활비	55
<표3-49> 부당대우 경험	56
<표3-50> 부당대우경험_근로계약서 미작성	58
<표3-51> 부당대우경험_사회보험 미가입	58
<표3-52> 부당대우경험_임금체불(미지급)	58
<표3-53> 부당대우경험_임금체불(지연지급)	59
<표3-54> 부당대우경험_최저임금 미준수	59
<표3-55> 부당대우경험_추가근무에 따른 수당 미지급	59
<표3-56> 부당대우경험_부당업무지시	60
<표3-57> 부당대우경험_추가업무강요	60
<표3-58> 부당대우경험_휴게시간 미준수	60
<표3-59> 부당대우경험_유급휴가 미지급	61
<표3-60> 부당대우경험_위험한 유형의 업무지시	61
<표3-61> 부당대우경험_부상 후 미치료	61
<표3-62> 부당대우경험_인격모독	62
<표3-63> 부당대우경험_구타나 폭행	62
<표3-64> 부당대우경험_성희롱이나 성폭력	62
<표3-65> 부당대우경험_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63
<표3-66> 부당대우경험_예고 없는 해고	63
<표3-67> 부당대우 경험 시 대처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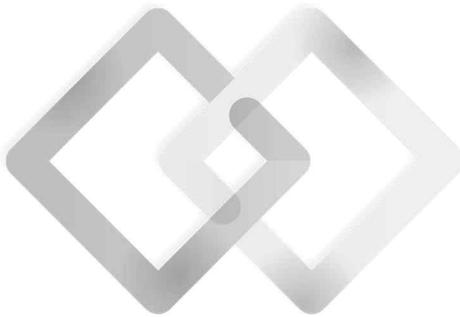
<표3-68> 부당노동행위 관련 상담 및 도움을 받고 싶은 분야	65
<표3-69> 사업주의 부당한 고용행위 인식시 상담 대상	65
<표3-70> 주관적인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해 인식수준_1	66
<표3-71> 주관적인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해 인식수준_2	66
<표3-72> 직업 관련 정보 중 제일 필요 한 정보	67
<표3-73> 노동법이나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경험	67
<표3-74> 교육 기관(100% 비율)	68
<표3-75> 노동 관련 교육이 주관적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69
<표3-76> 노동 관련 교육과 정답 개수	70
<표3-77> 노동 관련 지식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과 정답 개수	71
[그림3- 1] 응답자 성별	18
[그림3- 2] 응답자 연령	19
[그림3- 3] 응답자 학력	20
[그림3- 4] 현재 가출여부	21
[그림3- 5] 최초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연령	22
[그림3- 6] 일(아르바이트) 장소	24
[그림3- 7] 원하는 일(아르바이트) 장소	26
[그림3- 8] 실제 일한 곳과 일하고 싶은 곳을 비교	29
[그림3- 9] 구직방법	30
[그림3-10] 일(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주된 이유	31
[그림3-11] 구직 시 고려사항	32
[그림3-12] 불법이나 탈법적인 일(아르바이트) 경험	33
[그림3-13] 경제적 상황 1 : 나는 현재 갚아야 할 빚이 있다.	34
[그림3-14] 경제적 상황 1 (금액) : 나는 현재 갚아야 할 빚이 있다.	35
[그림3-15] 경제적 상황 2 : 나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다	35
[그림3-16] 경제적 상황 2 (금액) : 나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다	35
[그림3-17] 경제적상황3 : 나는 현재 신용불량이거나 과거에 신용불량 경험이 있다 .	36
[그림3-18] 구직 시 어려움	38
[그림3-19] 부당대우 경험	57
[그림3-20] 주관적인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한 인식 수준 2	66
[그림3-21] 노동 관련 교육이 주관적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69
[그림3-22] 노동 관련 교육과 정답 개수	70
[그림3-23] 노동 관련 지식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과 정답 개수	71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대전지역 위기청소년의 근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의 수는 연간 약 12만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청소년이 계속 거리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 국정감사 자료, 2020. 10. 27)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소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 의료, 생계 등을 포함한 자립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는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청소년 고용률을 보면 20~24세가 43.5%, 15~19세가 7.6%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여가부, 2020 청소년 통계) 하지만 청소년 고용률은 75.2%로 OECD 37개국 중 31위에 그친다는 통계도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많은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청소년 근로자가 13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근로 상담 건수는 13만 8771건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2년 전인 2018년 대비 70%가 상승한 수치이다. 근로 상담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예방교육 미 실시, 임금 미지급 등 다수의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국정감사 자료, 2020. 10. 27) 이를 보면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보 못지않게 노동인권 문제도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특히 거리에 방출된 위기 청소년들에게는 바로 생존권과 인권을 위협받는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자립이 최우선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는 무엇보다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청소년에 대한 일자리 및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그 특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 차원의 실태조사는 더욱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전지역의 위기청소년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에 지역의 청소년 복지 시설 및 단체들이 대전지역 최초로 위

기청소년에 대한 아르바이트 관련 기초 조사를 한 바가 있으나 예산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루어져 조사내용도 미흡한 점이 많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마련 및 그 근거들을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지역의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일자리 및 아르바이트의 노동 현황과 부당노동행위의 실태를 밝히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과 더불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연구 목적은 우선 대전지역 위기청소년의 근로 형태 및 조건, 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전지역 위기청소년들의 취업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실제적인 근로 형태까지 전반적인 근로조건과 환경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대전지역 위기청소년의 일자리와 관련된 특성과 성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대전지역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지역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유형 별로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려 했으며,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통합적인 일자리 관련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지역 위기청소년들이 자립 또는 생존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노동 환경과 현장의 실태를 분석하고,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을 제언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 실태 등을 살펴보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과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방법으로 선행 문헌연구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노동 또는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하였고, 관련하여 시사점들을 파악하기 위해 대전지역의 위기청소년의 일자리 및 노동 관련 전문가들의 집담회를 열고 의견들을 수렴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근래 10년 간의 학술지 게재 논문과 학위논문 중 청소년

일자리와 노동인권 문제 등 본 연구와 관련 있는 내용의 논문들을 찾아 분석을 하였다. 다만 기존 연구가 범위로는 전국, 대상으로는 학교안 청소년 또는 청소년 일반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언급은 부분적으로만 논의되었지만, 지역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시사점도 어느 정도 제기되었다는 면에서 충분히 참고할만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 동향과 내용들을 알 수 있었는데 주로 청소년의 일자리와 노동보호를 위한 정책 동향 및 대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기청소년 노동실태 조사는 대전지역의 청소년복지시설 입소생과 일시청소년쉼터의 아웃리치 현장에서 만난 14세에서 24세에 해당되는 위기청소년 2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주된 조사내용으로는 대전지역 위기청소년의 근로 형태 및 조건과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대전지역 위기청소년의 구직 동기, 취업 정보 서비스 이용 실태, 근로 형태와 조건 및 작업환경, 부당노동행위 실태 및 구제 활동 내용, 대전지역 일자리의 특성 및 청소년의 일자리에 대한 태도 및 성향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대전지역 위기청소년의 일자리 통합 지원체계 구축 모색에 대해서는 대전지역의 위기청소년의 안정적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파악, 청소년들의 일자리 관련 주요 상담 내용과 상담하는 곳, 대전지역 위기청소년의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방안 모색 등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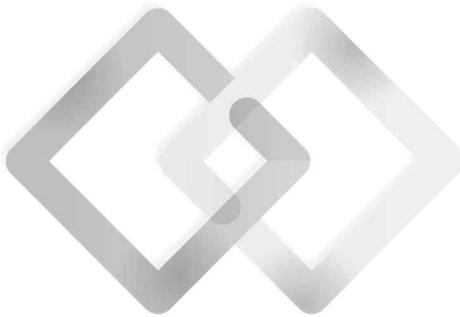
위기청소년 일자리 및 노동 관련 전문가 집담회에서는 대전지역 청소년복지시설과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시설 소장단과 대전시노동권익센터와 청소년공방 대표 등 10여명이 모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대전지역 위기청소년의 일자리 관련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지역의 위기청소년 일자리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모색하였다.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대전지역 위기청소년의 근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제2장 청소년 일자리 및 근로환경 관련 선행연구



제2장 청소년 일자리 및 근로환경 관련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또는 청소년 노동인권 등을 검색하여 10년 이내의 학위논문,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생각보다 논문이 많지 않았으며 더욱이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는 드물었다. 대부분이 학생 또는 청소년 일반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부분적으로 위기청소년을 언급하거나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일부 있었다. 그럼에도 대상의 공통성이 있고, 정책이나 법규와 관련하여 제안된 내용들 또한 위기청소년도 해당되기 때문에 선행연구에 포함하였으며, 안정적 일자리 지원체계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정책, 법규, 지원체계 등의 주제별로 구분하였고, 정책은 그 하위에 내용에 따라 구직환경 개선, 근로환경 개선, 노동인권 개선 등으로 세분하였다.

제1절 정책 개선 방안

1. 구직환경 개선

청소년에 대한 일 지원 정책 중 제일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은 구직환경 개선이다. 김수민은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에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 평가와 더불어 청소년 관련 근로감독 강화,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그리고 아동·청년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통일할 것을 주장하였다.¹⁾ 황진구 등은 한걸음 더 나아가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에서 일자리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 친화적 일자리 제공, 취약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 유인책 마련을 제안하였다.²⁾ 또 안선영 등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1』³⁾에서, 황여정 등은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청

1) 김수민,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사회법 연구』 45호, 한국사회법학회, 2021, 98-103쪽.

2) 황진구 외,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235-238쪽.

3) 안선영 외,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242-290쪽.

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2』⁴⁾에서 공통적으로 정책 제안을 통해 구직 환경 개선으로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청소년 친화적 일자리 확대 및 정보 제공 등을 들고 있다.

2. 근로환경 개선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해 김형주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건강 검진 의무화와 정신 건강 서비스 도입을 주장했으며,⁵⁾ 황진구는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권 보장은 물론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감독강화,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화, 알기 쉬운 법률·행정 용어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또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 강화, 배달노동의 규제 강화, 위험노동으로부터의 보호를 제안하고 있다.⁶⁾ 황여정은 특히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근로계약서 작성 규정을 준수하는 노동시장 환경 조성, 급여명세서 작성 강화, 휴게권 보장, 사업장 근로감독 방법 개선 등과 옴부즈맨 제도 활성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근로감독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⁷⁾

3. 노동인권 개선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김수민은 청소년 관련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고,⁸⁾ 권일남, 전명순은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기회의 확대, 노동인권교육단체의 양성,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추진과 같은 제도적 보완,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⁹⁾ 김형주는 노동인권

4) 황여정 외,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273-335쪽.

5) 김형주 외,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248-250쪽.

6) 황진구 외, 앞의 책, 239-245쪽.

7) 황여정 외, 앞의 책, 284-325쪽.

8) 김수민 외, 앞의 책, 98-102쪽.

9) 권일남, 전명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 활동 연구』 6권 2호, 한국청소년활동학회, 2020.

교육 수혜 청소년 확대¹⁰⁾와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를 역설하고 있다.¹¹⁾ 황진구는 보다 다양한 노동인권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부당한 임금삭감으로부터의 보호 방안, 학습시간 보장과 훈련조건 명시, 진로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 방안 등과 더불어 인격보호와 관련해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차별적 업무 환경 개선 등과 청소년의 노동3권 보장 및 노사기구의 청소년 참여 보장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인권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근로감독기능 강화 방안 및 법 위반행위 상담 및 구제 체계의 접근성 향상안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교육 및 캠페인, 연령 차별적인 위계적 문화 개선까지 제안하고 있다.¹²⁾ 황여정은 청소년 일반에 대해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대응 제도 개선과 부당대우에 대한 신고·상담 제도 내실화, 그리고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수습기간 중 감액 금지와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주장하는 한편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 교육 실시까지 주장하였다.¹³⁾ 안선영은 노동인권 교육의 방법론으로 소규모 참여형 교육 강화와 특히 가정밖·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제안하였다.

제2절 청소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규의 제정 및 개선

관련 법규의 제정과 개선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우전 지장자치단체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관련 조례 제정 상황을 보면, 김수민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안선영은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2022년 10월 말일 기준으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청소년 노동’ 또는 ‘청소년 근로’로 검색한 결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가 84건,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조례가 4건으로 총 88건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가 17곳, 기초지자체가 226곳임을 볼 때, 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약 3분의 1밖

10) 김형주 외, 앞의 책. 251~253쪽.

11) 김형주 외, 앞의 책. 246~247쪽.

12) 황진구 외, 앞의 책, 246~261쪽.

13) 황여정 외, 앞의 책. 326~339쪽

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 곳은 더욱 드물다. 특히 대전의 경우는 현재 기초지자체 중 서구와 유성구만이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광역시와 동구, 중구, 대덕구는 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노동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배건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 청소년 노동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근로기준법의 청소년 노동에 대한 연령 기준을 16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방안의 검토와 15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가정박 청소년과 학교박 청소년의 취업 수요 대비 형식 요건(법정 대리인 동의서, 취지 인허증 등)을 갖추기 어려운 점을 들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청소년 노동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벌칙을 강화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기본정책 수립과 관련해, 노동, 교육, 보건 및 복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및 청소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⁴⁾

최영진도 배건이와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는 「연소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의 개념을 어린이, 아동, 청소년 등으로 연령별 기준을 마련해야 함과 근로기준법상 취업의 최저연령은 국제노동기준 및 우리나라 의무교육 종료 연령에 따라 현행 ‘15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소자 노동 보호의 최고연령도 민법상 성인규정과 부합하도록 현행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하며, 또 최저 취업연령 이상의 연소자의 경우, 취업에는 원칙적으로 연령증명서만을 요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까지는 요구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최영진은 연소자의 생존권, 학습권, 인격권, 노동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령대와 업종별로 야간근로·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연소자의 근로활동이 그 형태와 내용에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소자의 노동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령, 예컨대 ‘청소년근로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¹⁵⁾

14) 배건이,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 청소년 노동을 중심으로」, 『글로벌 법제 전략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1, 169-171쪽.

15) 최영진, 「연소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법학회, 2018, 239-245쪽.

제3절 청소년의 근로지원 체계 구축과 노동인권 의식 확대

청소년 노동의 보호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실행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김형주는 종합적인 위기청소년 노동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¹⁶⁾ 강경균은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의 공공시설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 모형을 제시하였고, 청소년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며 청소년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¹⁷⁾ 다만 앞으로 위기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심리·정서적인 요인, 신체적인 요인, 학습 및 인지에 대한 요인, 사회경제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단순히 일 또는 노동만의 기능적인 문제만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이러한 요인들을 망라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으로까지 연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과 관련해 박상진은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노동참여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 개선과 노동에 대한 가치 정립을 올바르게 할 것, 그리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의 유형 확대 및 참여의 질 제고와 노동 참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⁸⁾

제4절 선행연구 분석 종합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표로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16) 김형주 외, 앞의 책, 259쪽.

17) 강경균 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285-293쪽.

18) 박상진,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에 관한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JOCT)』, (사)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1, 270쪽.

<표 2-1> 선행연구 속에 나타난 청소년의 안정적 일 지원체계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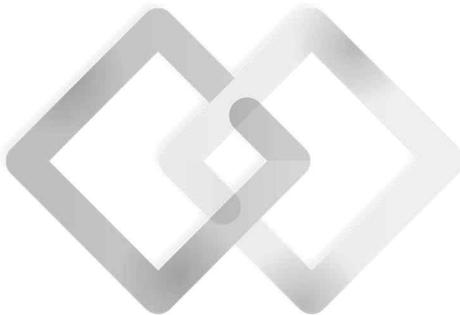
구분	내용
<p>구직환경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 청소년 친화적 일자리 및 특히 취약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 확대 ○ 청소년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 기능 개선, 강화 및 관청은 일자리로의 진입 유인책 마련 ○ 인터넷에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소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활용도 제고
<p>근로환경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일하는 청소년의 건강 검진 의무화 및 정신건강 서비스 도입 ○ 노동조건에 대해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감독 강화,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화, 알기 쉬운 법률행정 용어로 변경 ○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 강화, 배달노동의 규제 강화, 위험노동으로부터의 보호 강화 ○ 급여명세서 작성 강화, 휴게권 보장, 사업장 근로감독 방법 개선 - 옴부즈맨 제도 활성화,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 활성화 등
<p>정책</p> <p>노동인권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관련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 -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 가정밖·학교밖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기회의 확대 및 노동인권 교육단체의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참여형 교육 강화 및 교육의 내실화 - 학습시간 보장과 훈련조건 명시, 진로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방안 수립 ○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추진과 같은 제도적 보완 ○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 인격보호에 대한 권리 보장으로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및 차별적 업무 환경 개선 ○ 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의 노동 3권 보장 및 노사기구의 청소년 참여 보장 ○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인권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법 위반행위 상담 및 구제 체계의 접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적용과 부당한 임금 삭감으로부터의 보호 방안 강구 -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대응 제도 개선 - 부당대우에 대한 신고·상담 제도 내실화 -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수습기간 중 감액 금지 -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교육 및 캠페인, 연령 차별적인 위계적 문화 개선
<p>법규 제·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 조례 제정 ○ 근로기준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노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개정 - 가정밖, 또는 학교밖 청소년의 취업 형식 요건(법정대리인 동의서, 취직 인허증 등) 완화 - 15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보호체계 보완 - 청소년 노동 관련 감독 및 벌칙 강화 ○ 청소년기본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기본정책 수립 시 노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 청소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p>지원체계 구축</p>	<p>종합적인 위기청소년 노동지원센터 설치</p> <p>지역 위기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네트워크 구축</p>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대전지역 위기청소년의 근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제3장 대전지역 위기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분석



제3장 대전지역 위기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분석

본 설문조사는 대전지역 위기청소년들의 안정적 일자리(아르바이트)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청소년의 일 경험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만 15세에서 24세까지의 대전지역의 청소년쉼터, 회복지원시설, 상담복지센터, 꿈드림센터 등의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210명의 청소년 중 임금을 목적으로 한 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2년 6월에서 8월까지 약 2달에 걸쳐 청소년의 구직 환경 및 근로 형태와 환경, 그리고 청소년들의 노동법 체계에 대한 인식 정도와 부당노동행위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의 구체적 내용은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일자리(아르바이트) 현황, 구직 조건과 환경, 근로 정보 인식 정도와 근로 경험, 부당노동행위 경험과 대처 방안, 등으로 수거된 총 210부의 설문지 중 유효 설문지인 208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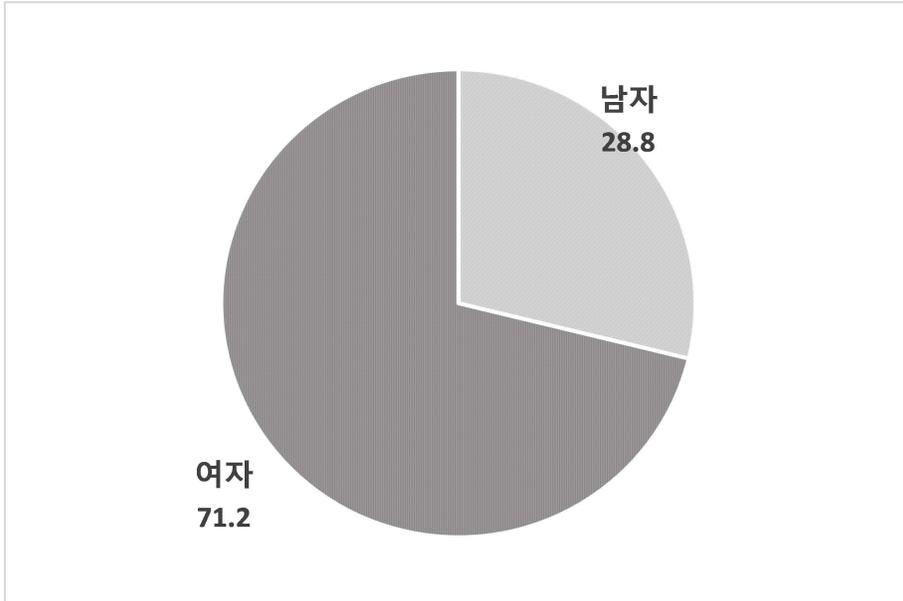
1. 성별

본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은 208명으로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60명(28.8%)이고 ‘여자’가 148명(71.2%)으로 여자가 높았음.

<표 3-1> 응답자 성별

구분	빈도(명)	퍼센트(%)
남자	60	28.8
여자	148	71.2
전체	208	100.0

[그림 3-1] 응답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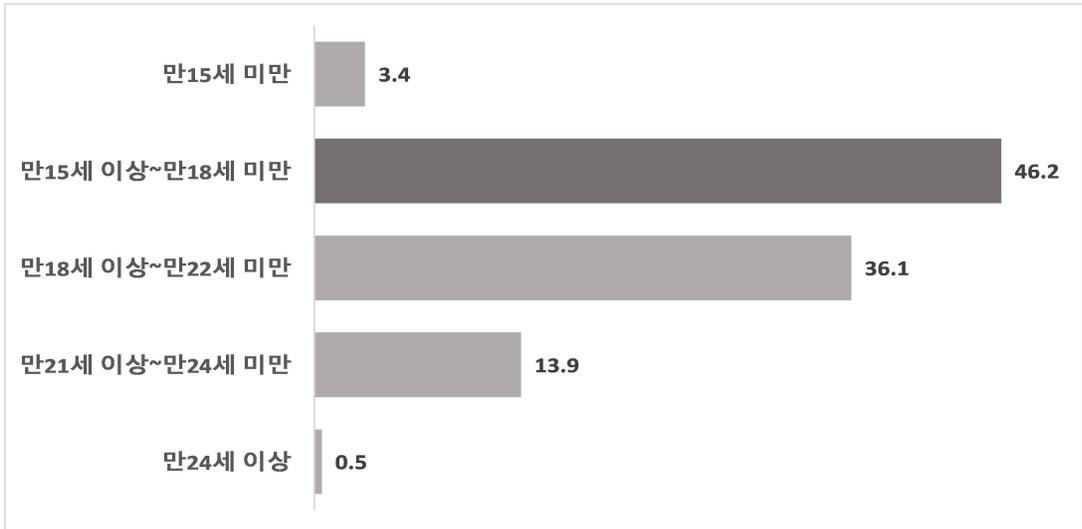
2. 연령

조사대상자의 나이는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2004년 9월~2007년 8월)’ 이 96명 (46.2%)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만 18세이상~만 21세 미만(2001년 9월~2004년 8월)이 75명(46.1%), 만 21세 이상~만 24세 미만(1998년 9월~2001년 8월) 29명(13.9%), 만 15세 미만(2007년 9월 이후 출생) 7명(3.4%), 만 24세(1998년 1월 ~1998년 9월 이전 출생) 1명(0.5%) 순이었음

<표 3-2> 응답자 연령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만15세 미만	7	3.4
만15세 이상~만18세 미만	96	46.2
만18세 이상~만22세 미만	75	36.1
만21세 이상~만24세 미만	29	13.9
만24세 이상	1	0.5
전체	208	100.0

[그림 3-2] 응답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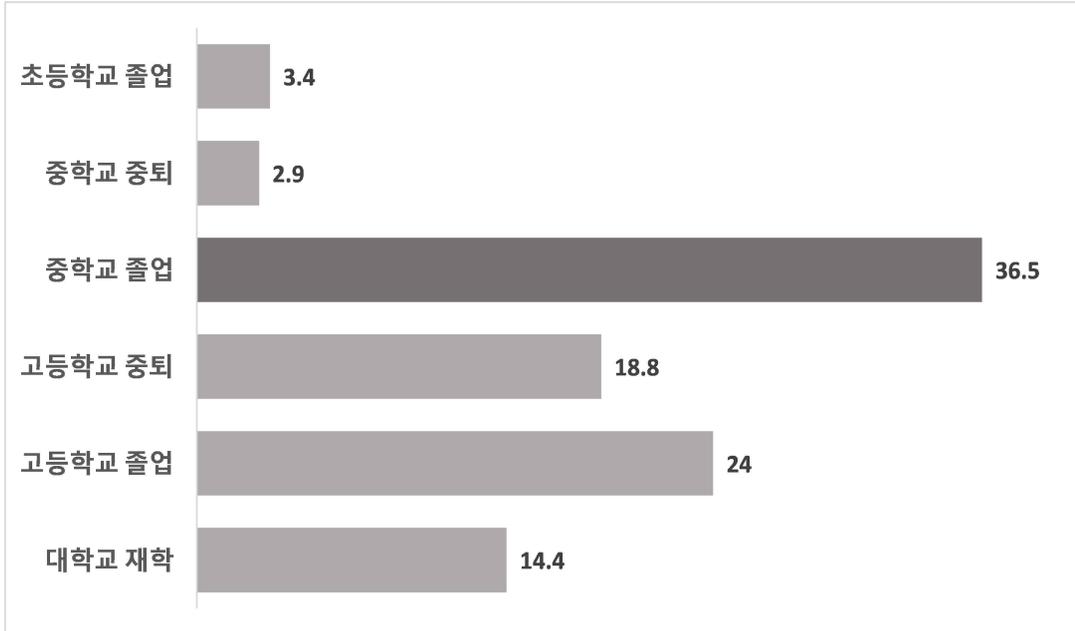
3. 학력

조사대상자 중 76명(36.5%)은 중학교 졸업 학력이며, 이는 고등학교 재학도 포함임. 고등학교 졸업 학력은 50명(24%)이며, 고등학교 중퇴가 39명(18.8%), 대학교 재학중 30명(14.4%), 초등학교 졸업 7명(3.4%), 중학교 중퇴 6명(2.9%) 순이었음

<표 3-3> 응답자 학력

구분	빈도(명)	퍼센트(%)
초등학교 졸업	7	3.4
중학교 중퇴	6	2.9
중학교 졸업	76	36.5
고등학교 중퇴	39	18.8
고등학교 졸업	50	24.0
대학교 재학	30	14.4
전체	208	100.0

[그림 3-3] 응답자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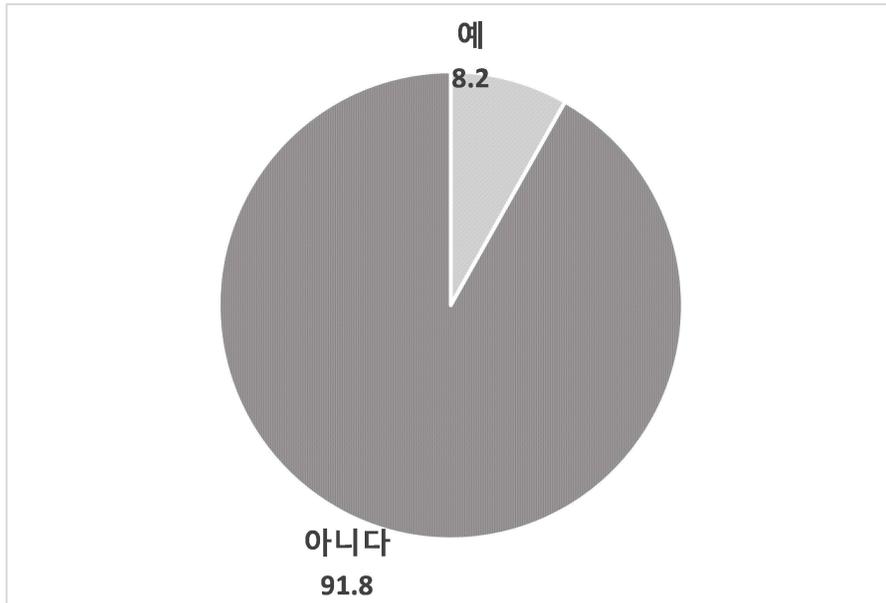
4. 현재 가출여부

조사대상자 중 191명(91.8%)은 가출 중이 아니었으며, 17명(8.2%)는 현재 가출 중이라 응답하였음.

<표 3-4> 현재 가출여부

구분	빈도(명)	퍼센트(%)
예	17	8.2
아니다	191	91.8
전체	208	100.0

[그림 3-4] 현재 가출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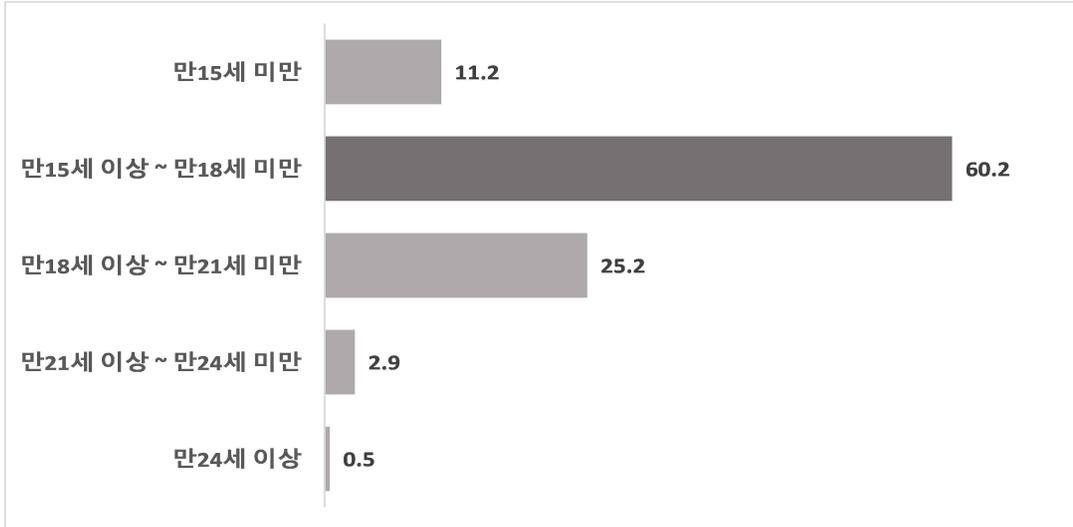
5. 최초 일(아르바이트) 시작 연령

조사대상자 중 124명(60.2%)이 만 15세 이상~만 18세 미만 시기에 일을 시작하였고 만 18세 이상~만 21세 미만 시기에 52명(25.2%)이 일을 시작하였다고 함. 그밖에 만 15세 미만 시기에 시작한 응답자는 23명(11.2%), 만 21세 이상~만 24세 미만이 6명(2.9%), 만 24세가 1명(0.5%) 순으로 최초 일(아르바이트)을 시작하였다고 응답하였음.

<표 3-5> 최초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연령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만15세 미만	23	11.2
만15세 이상 ~ 만18세 미만	124	60.2
만18세 이상 ~ 만21세 미만	52	25.2
만21세 이상 ~ 만24세 미만	6	2.9
만24세 이상	1	0.5
전체	206	100.0

[그림 3-5] 최초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연령



제2절 조사대상자의 아르바이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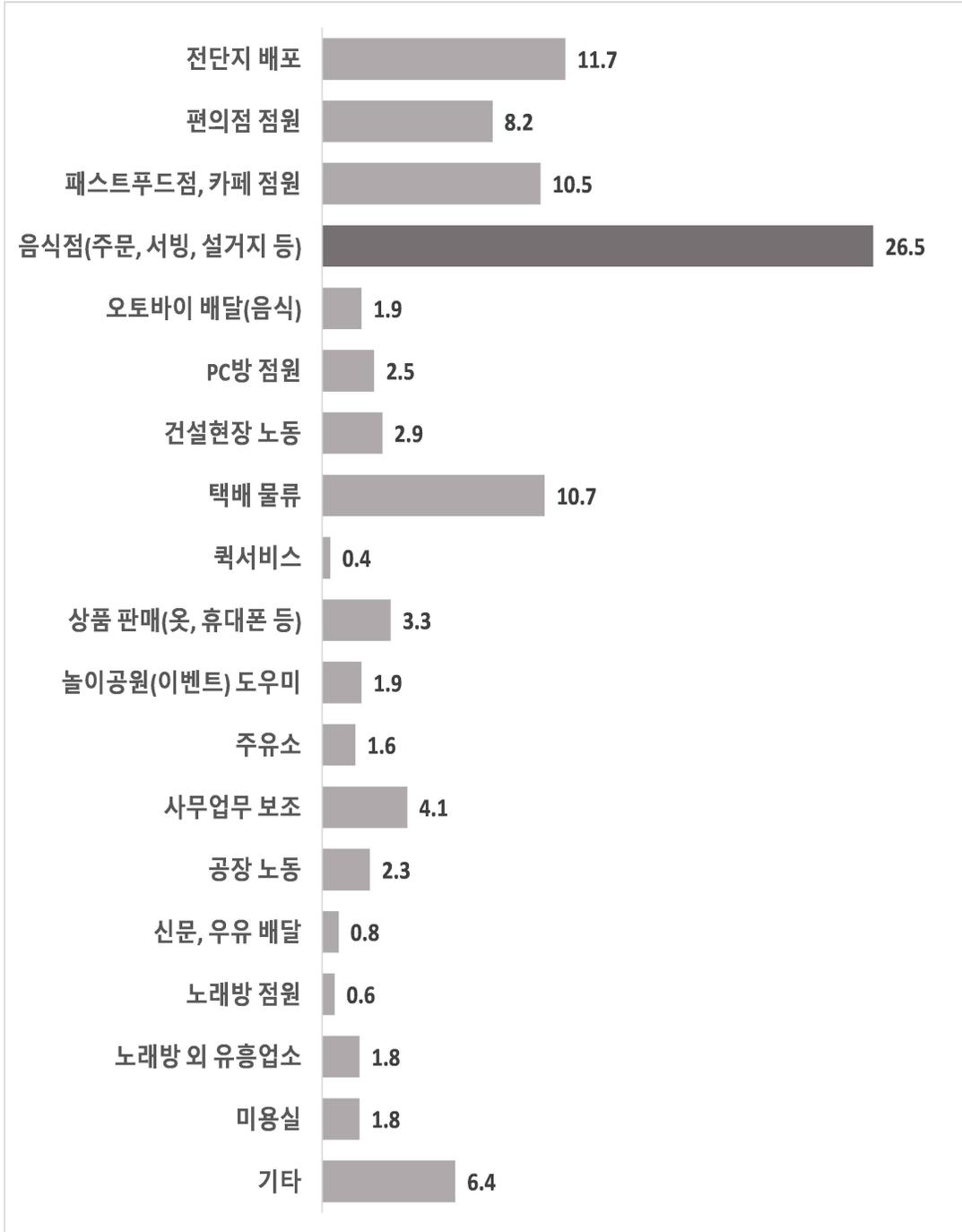
1. 일(아르바이트) 장소

조사대상자에게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일(아르바이트)장소를 조사한 결과 음식점이 136명 (26.5%)로 가장 높았으며, 전단지 60명(11.7%), 택배물류 55명(10.7%), 패스트푸드, 카페 54명 (10.5%) 순이었음. 그밖에 사무업무, 상품판매, 건설현장등으로 응답하였음. 기타 장소로는 수공업, 예식장, 뷔페등 다양한 장소에서 일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표 3-6> 일(아르바이트) 장소(복수응답, 100% 비율 분석)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단지 배포	60	11.7
편의점 점원	42	8.2
패스트푸드점, 카페 점원	54	10.5
음식점(주문, 서빙, 설거지 등)	136	26.5
오토바이 배달(음식)	10	1.9
PC방 점원	13	2.5
건설현장 노동	15	2.9
택배 물류	55	10.7
퀵서비스	2	0.4
상품 판매(옷, 휴대폰 등)	17	3.3
놀이공원(이벤트) 도우미	10	1.9
주유소	8	1.6
사무업무 보조	21	4.1
공장 노동	12	2.3
신문, 우유 배달	4	0.8
노래방 점원	3	0.6
노래방 외 유흥업소	9	1.8
미용실	9	1.8
기타	33	6.4
전체	513	100.0

[그림 3-6] 일(아르바이트)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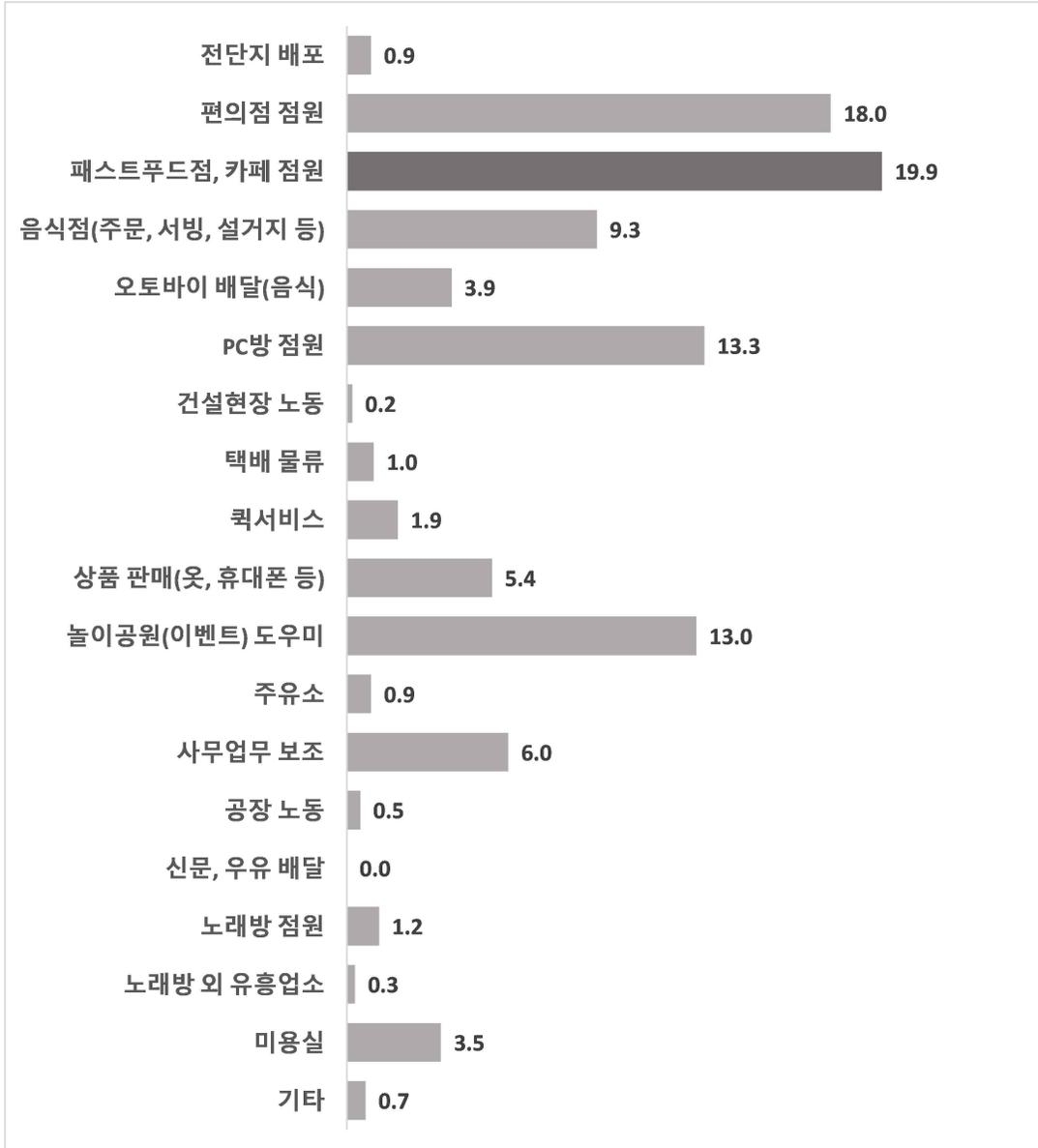
2. 원하는 일(아르바이트) 장소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일(아르바이트)장소에 대하여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한 결과 177명(19.9%)가 패스트푸드, 카페점원으로 응답해 가장 많았으며, 편의점 점원은 160명(18.0%), PC방 118명(13.3%), 놀이공원 도우미 115명(13.0%)순이었으며, 그밖에 음식점(주문, 서빙, 설거지), 사무업무보조, 상품판매 등으로 응답함. 기타 원하는 일(아르바이트)로 콜센터, 당구장, 운동선수, 모델을 응답하였음.

<표 3-7> 원하는 일(아르바이트) 장소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단지 배포	1	0.7	1	0.7	3	2.0	8	0.9
편의점 점원	24	16.2	29	19.6	30	20.3	160	18.0
패스트푸드점, 카페 점원	35	23.6	28	18.9	16	10.8	177	19.9
음식점(주문, 서빙, 설거지 등)	12	8.1	15	10.1	17	11.5	83	9.3
오토바이 배달(음식)	8	5.4	4	2.7	3	2.0	35	3.9
PC방 점원	17	11.5	26	17.6	15	10.1	118	13.3
건설현장 노동	0	0.0	0	0.0	2	1.4	2	0.2
택배 물류	1	0.7	2	1.4	2	1.4	9	1.0
퀵서비스	4	2.7	2	1.4	1	0.7	17	1.9
상품 판매(옷, 휴대폰 등)	4	2.7	7	4.7	22	14.9	48	5.4
놀이공원(이벤트) 도우미	24	16.2	16	10.8	11	7.4	115	13.0
주유소	1	0.7	2	1.4	1	0.7	8	0.9
사무업무 보조	11	7.4	6	4.1	8	5.4	53	6.0
공장 노동	0	0.0	2	1.4	0	0.0	4	0.5
신문, 우유 배달	0	0.0	0	0.0	0	0.0	0	0.0
노래방 점원	0	0.0	3	2.0	5	3.4	11	1.2
노래방 외 유흥업소	0	0.0	0	0.0	3	2.0	3	0.3
미용실	5	3.4	5	3.4	6	4.1	31	3.5
기타	1	0.7	0	0.0	3	2.0	6	0.7
전체	148	100.0	148	100.0	148	100.0	888	100.0

[그림 3-7] 원하는 일(아르바이트)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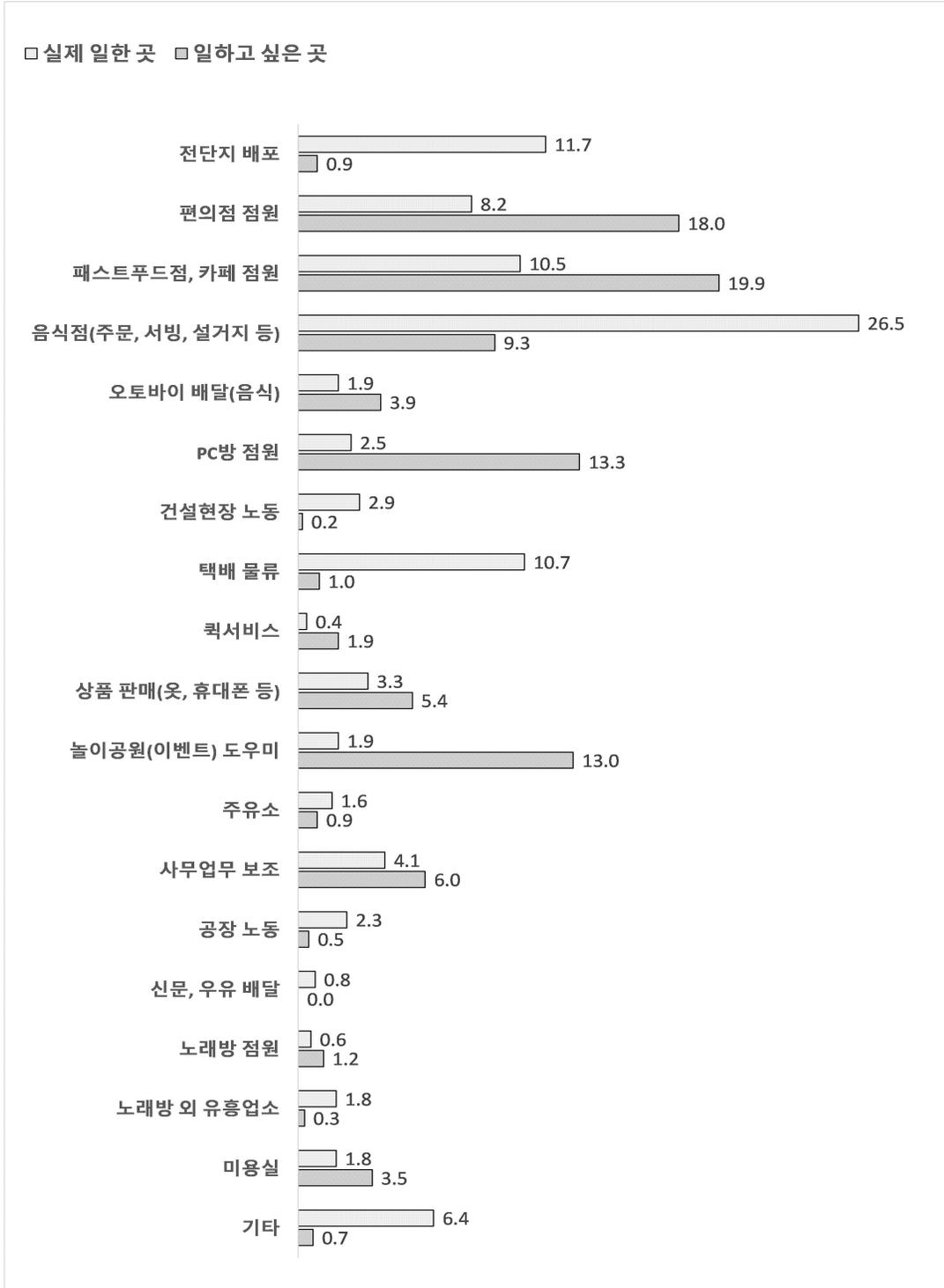
2). 실제 일한 곳과 일하고 싶은 곳을 비교

실제 일한 곳과 일하고 싶은 곳을 비교하여 분석해본 결과 일한곳의 빈도는 음식점(주문, 서빙, 설거지등)이 136명(26.5%), 전단지 배포 60명(11.7%), 택배물류 55명(10.7%), 패스트푸드점, 카페점원이 54명(10.5%) 순이었으나 일하고 싶은 곳의 빈도는 패스트푸드, 카페점원이 177명(19.9%)으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 점원(160명(18.0%), PC방점원 118명(13.3%), 놀이공원 도우미 115명(13.0%)으로 실제 일한 곳과 일하고 싶은 곳이 차이가 있음.

<표 3-8> 실제 일한 곳과 일하고 싶은 곳 비교

구분	실제 일한 곳*		일하고 싶은 곳**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전단지 배포	60	11.7	8	0.9
편의점 점원	42	8.2	160	18.0
패스트푸드점, 카페 점원	54	10.5	177	19.9
음식점(주문, 서빙, 설거지 등)	136	26.5	83	9.3
오토바이 배달(음식)	10	1.9	35	3.9
PC방 점원	13	2.5	118	13.3
건설현장 노동	15	2.9	2	0.2
택배 물류	55	10.7	9	1.0
퀵서비스	2	0.4	17	1.9
상품 판매(옷, 휴대폰 등)	17	3.3	48	5.4
놀이공원(이벤트) 도우미	10	1.9	115	13.0
주유소	8	1.6	8	0.9
사무업무 보조	21	4.1	53	6.0
공장 노동	12	2.3	4	0.5
신문, 우유 배달	4	0.8	0	0.0
노래방 점원	3	0.6	11	1.2
노래방 외 유흥업소	9	1.8	3	0.3
미용실	9	1.8	31	3.5
기타	33	6.4	6	0.7

[그림 3-8] 실제 일한 곳과 일하고 싶은 곳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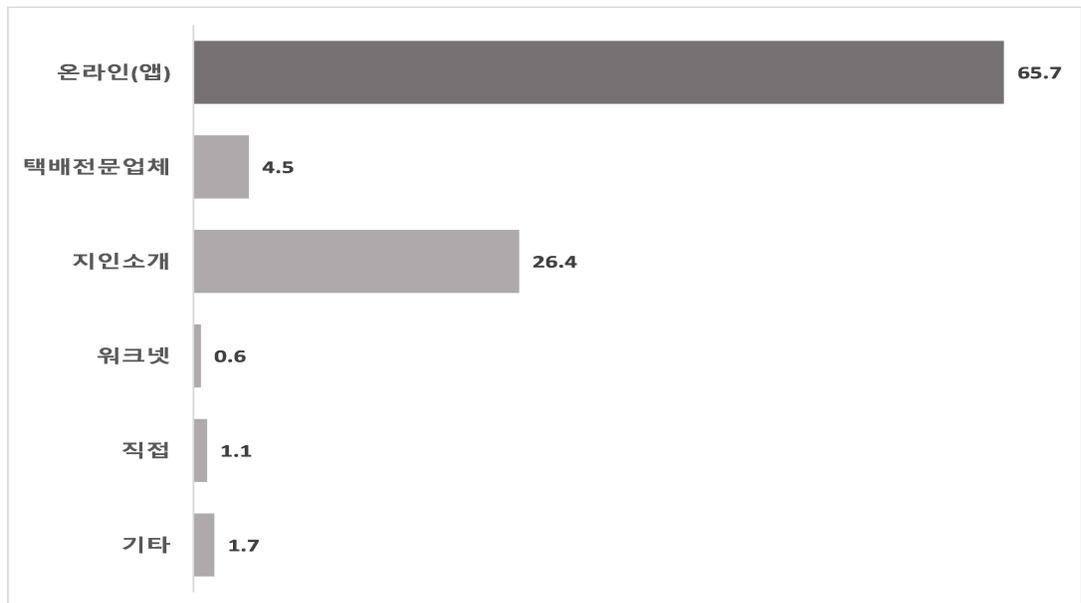
3. 구직 방법

조사대상자의 구직방법에 대하여 온라인(앱)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117명(65.7%)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지인소개 47명(26.4%) 등이었으며, 택배전문업체 8명(4.5%)이 뒤를 이었음. 그밖에 직접 일자리 등에 찾아가 구직을 하는 경우도 2명(1.1%), 워크넷을 통하는 경우도 1명(0.6%)이 응답함. 또한 기타응답으로 학교밖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하여 구직했다는 응답이 3명(1.7%)이 포함되어 있어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

<표 3-9> 구직방법

구분	빈도(명)	퍼센트(%)
온라인(앱)	117	65.7
택배전문업체	8	4.5
지인소개	47	26.4
워크넷	1	0.6
직접	2	1.1
기타	3	1.7
전체	178	100.0

[그림 3-9] 구직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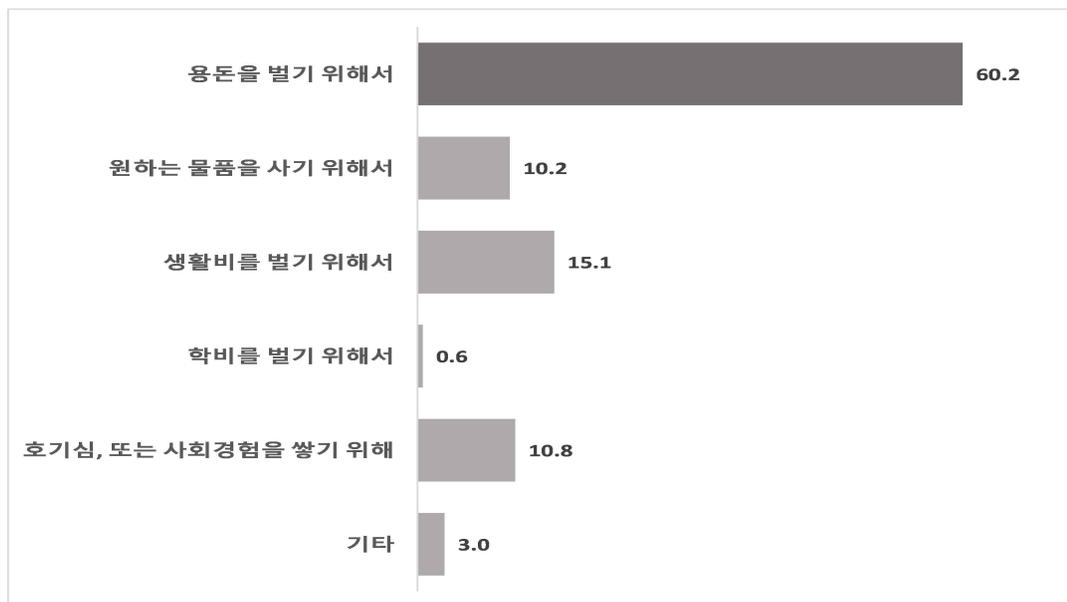
4. 일(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주요 이유

조사대상자 중 100명(60.2%)이 용돈을 벌기 위해 일(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하였고, 이어 25명(15.1%)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18명(10.8%)는 호기심, 또는 사회경험을 쌓기위해라고 응답함. 또한 원하는 물품을 사기 위해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17명(10.2%), 기타(심심해서, 배움을 위해, 가족을 빛을 갚기위해)로 응답한 경우가 5명(3.0%)이었으며, 학비를 벌기 위해 일(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이 1명(0.6%)로 뒤를 이었음.

<표 3-10> 일(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주된 이유

구분	빈도(명)	퍼센트(%)
용돈을 벌기 위해서	100	60.2
원하는 물품을 사기 위해서	17	10.2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25	15.1
학비를 벌기 위해서	1	0.6
호기심, 또는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18	10.8
기타	5	3.0
전체	166	100.0

[그림 3-10] 일(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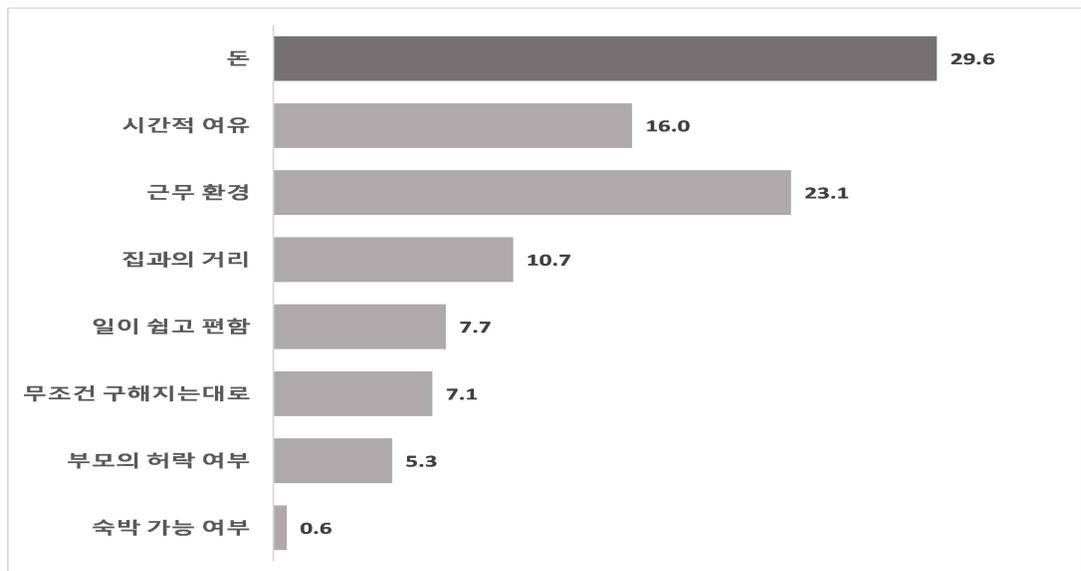
5. 구직 시 고려사항

조사응답자의 81.3%가 응답하였고 그중 50명(29.6%)이 돈(급여)을 구직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근무환경 39명(23.1%), 시간적 여유 27명(16.0%), 집과의 거리 18명(10.7%), 일이 쉽고 편함 13명(7.7%)으로 응답하였음. 이어 무조건 구해지는 대로 12명(7.1%), 부모의 허락 여부 9명(5.3%), 숙박 가능 여부 1명(0.5%) 순이었음.

<표 3-11> 구직 시 고려사항

구분	빈도(명)	퍼센트(%)
돈	50	29.6
시간적 여유	27	16.0
근무 환경	39	23.1
집과의 거리	18	10.7
일이 쉽고 편함	13	7.7
무조건 구해지는대로	12	7.1
부모의 허락 여부	9	5.3
숙박 가능 여부	1	0.6
전체	166	100.0

[그림 3-11] 구직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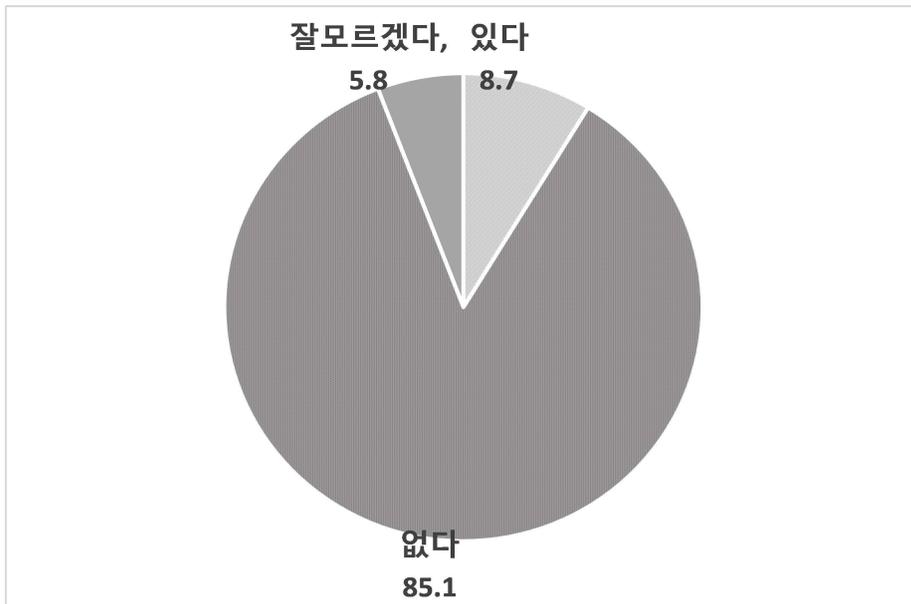
6. 불법이나 탈법적인 일(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조사응답자 중 177명(85.1%)이 불법이나 탈법적인 일(아르바이트)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18명(8.7%)은 불법이나 탈법적인 일(아르바이트)을 경험해 보았다고 응답함. 12명(5.8%)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음.

<표 3-12> 불법이나 탈법적인 일(아르바이트) 경험

구분	빈도(명)	퍼센트(%)
있다	18	8.7
없다	177	85.1
잘모르겠다	12	5.8
전체	207	100.0

[그림 3-12] 불법이나 탈법적인 일(아르바이트) 경험



7. 경제적 상황(빚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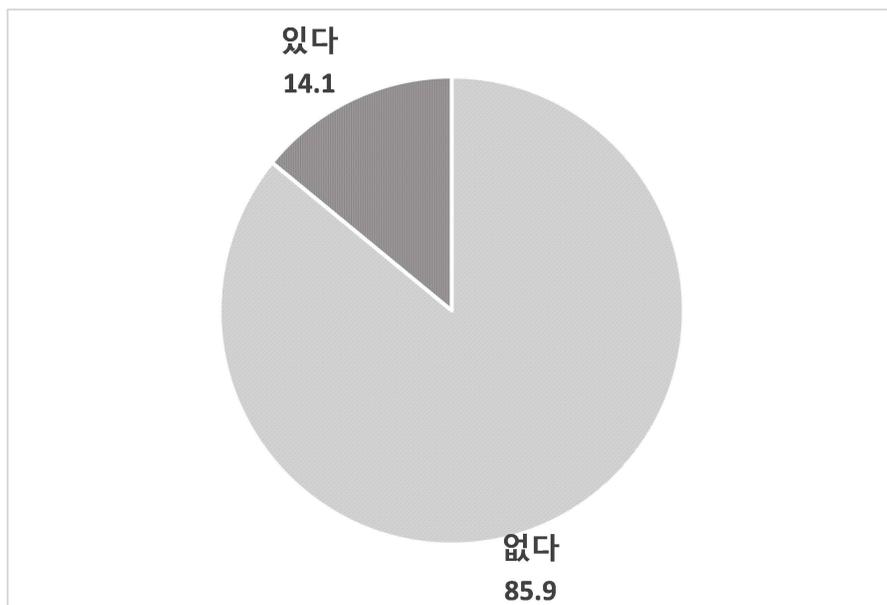
응답자 중 171명(85.9%)이 현재 빚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28명(14.1%)은 빚이 있다고 응답함. 50만원 미만의 빚이 있는 경우는 11명(5.5%),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의 빚이 있는 경우는 3명(1.5%),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의 빚이 있는 경우 6명(3.0%)이 응답하였음.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의 빚이 있는 경우는 2명(1.0%)이 응답하였으며 1000만원 이상의 빚이 있다 응답한 인원이 6명(2.9%)임.

<표 3-13> 경제적 상황 1 : 나는 현재 갚아야 할 빚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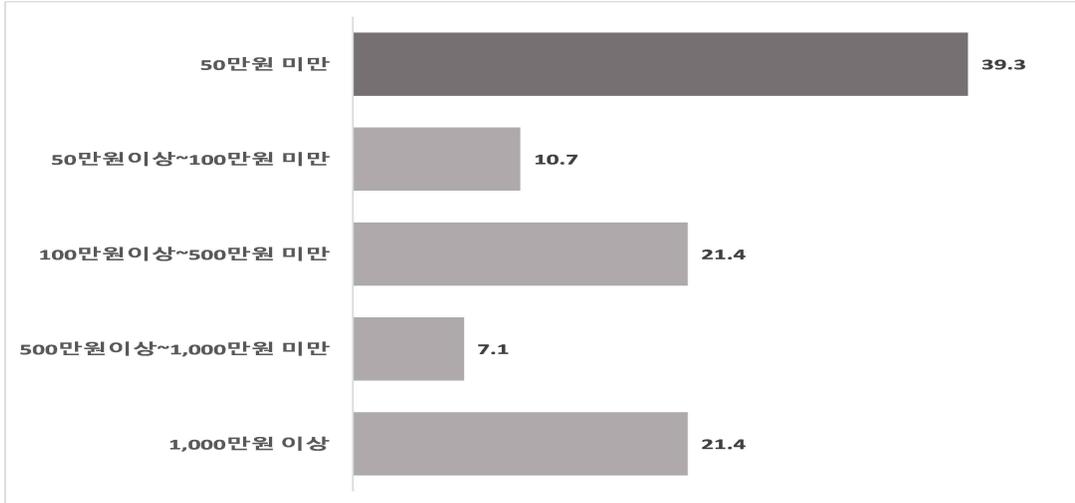
구분	빈도(명)	퍼센트(%)
없다	171	85.9
있다	28	14.1(100.0)*
50만원 미만	11	5.5(39.3)
50만원이상~100만원 미만	3	1.5(10.7)
1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	6	3.0(21.4)
500만원이상~1,000만원 미만	2	1.0(7.1)
10,00만원 이상	6	3.0(21.4)
전체	207	100.0

* ()의 %는 빚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값임

[그림 3-13] 경제적 상황 1 : 나는 현재 갚아야 할 빚이 있다.



[그림 3-14] 경제적 상황 1 (금액) : 나는 현재 갚아야 할 빚이 있다.



8. 저축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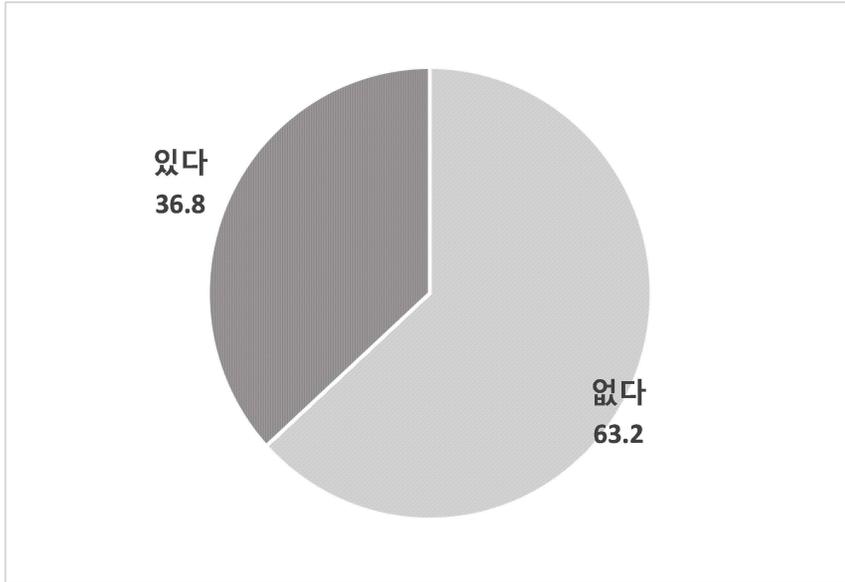
조사 응답자 중 120명(63.2%)은 현재 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70명(36.8%)은 현재 저축을 하고 있다 응답하였음. 그중 50만원 미만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는 34명(17.9%)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라 23명(12.1%)이 응답하였음. 이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과 1000만원 이상이 각각 5명(2.6%) 뒤를 이었으며, 500만원 이상~1000원 미만이 3명(1.6%) 순이었음.

<표 3-14> 경제적 상황 2 : 나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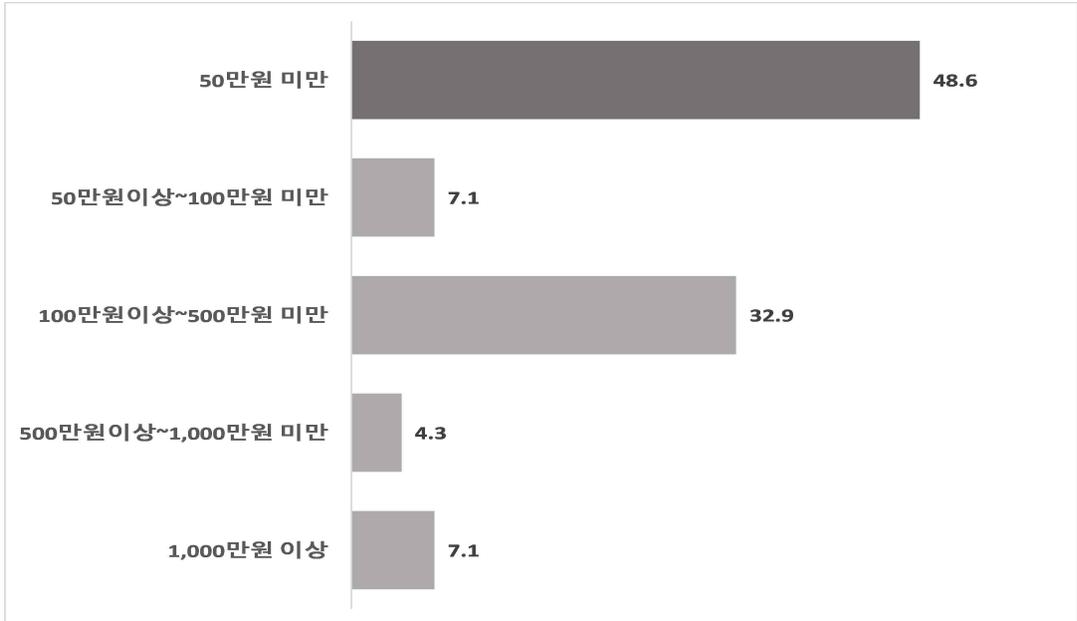
구분	빈도(명)	퍼센트(%)
없다	120	63.2
있다	70	36.8(100.0)*
50만원 미만	34	17.9(48.6)
50만원이상~100만원 미만	5	2.6(7.1)
1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	23	12.1(32.9)
500만원이상~1000만원 미만	3	1.6(4.3)
1000만원 이상	5	2.6(7.1)
전체	190	100.0

* ()의 %는 빚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값임

[그림 3-15] 경제적 상황 2 : 나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다



[그림 3-16] 경제적 상황 2(금액): 나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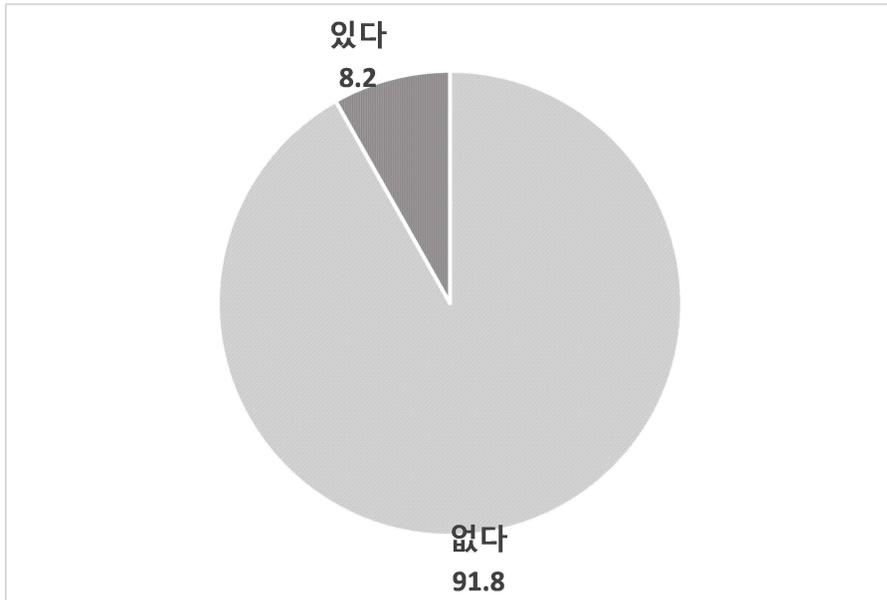
9. 신용불량 경험

조사응답자 중 180명(91.8%)는 신용불량 경험이 없었으며 16명(8.2%)는 신용불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3-15> 경제적 상황 3 : 나는 현재 신용불량이거나 과거에 신용불량 경험이 있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없다	180	91.8
있다	16	8.2
전체	196	100.0

[그림 3-17] 경제적상황3 : 나는 현재 신용불량이거나 과거에 신용불량 경험이 있다



제3절 조사대상자의 구직 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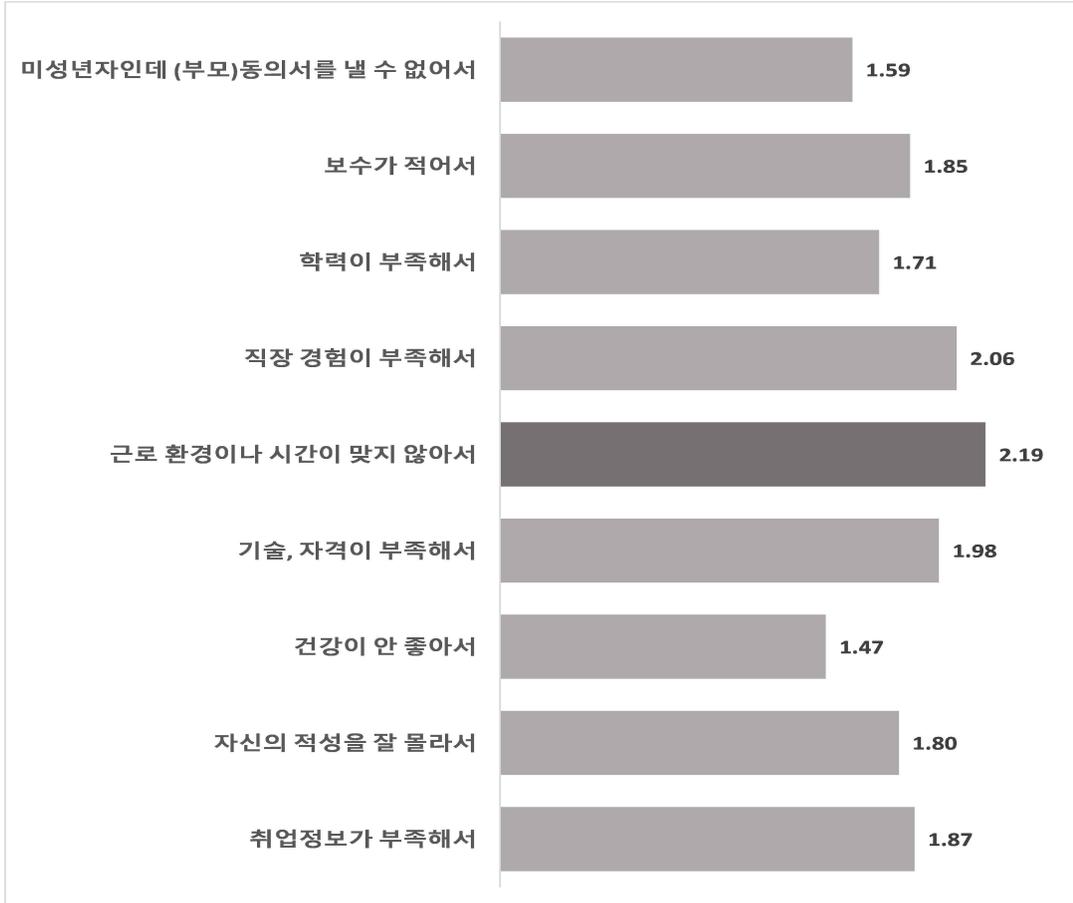
조사대상자가 구직 시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에서 근로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이 78명(37.8%)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경험이 부족해서가 61명(29.5%)으로 뒤를 이음. 그밖에 기술, 자격이 부족해서와 취업정보가 부족해서가 각각 54명(26.2%), 보수가 적어서 48명(23.2%)이 응답함. 또한 자신의 적성을 잘 몰라서 42명(20.4%), 동의를 낼 수 없어서 36명(17.3%)이 뒤를 이음.

<표 3-16> 구직 시 어려움

구분	부정			긍정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를 낼 수 없어서	172 (82.7)	132 (63.5)	40 (19.2)	36 (17.3)	25 (12.0)	11 (5.3)	1.59
보수가 적어서	153 (73.9)	92 (44.4)	61 (29.5)	54 (26.1)	48 (23.2)	6 (2.9)	1.85
학력이 부족해서	161 (77.8)	117 (56.5)	44 (21.3)	46 (22.2)	35 (16.9)	11 (5.3)	1.71
직장 경험이 부족해서	130 (62.8)	80 (38.6)	50 (24.2)	77 (37.2)	61 (29.5)	16 (7.7)	2.06
근로 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116 (56.3)	62 (30.1)	54 (26.2)	90 (43.7)	78 (37.9)	12 (5.8)	2.19
기술, 자격이 부족해서	140 (68.0)	82 (39.8)	58 (28.2)	66 (32.0)	54 (26.2)	12 (5.8)	1.98
건강이 안 좋아서	189 (91.7)	130 (63.1)	59 (28.6)	17 (8.2)	13 (6.3)	4 (1.9)	1.47
자신의 적성을 잘 몰라서	156 (75.7)	100 (48.5)	56 (27.2)	50 (24.3)	42 (20.4)	8 (3.9)	1.80
취업정보가 부족해서	144 (69.9)	96 (46.6)	48 (23.3)	62 (30.1)	54 (26.2)	8 (3.9)	1.87

* 기타는 제외함

[그림 3-18] 구직 시 어려움



1. 동의서 제출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아르바이트)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친권자(후견인)동의서 등을 제출해야함. 구직 시 이러한 동의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에 132명(63.5%)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응답하였고, 40명(19.2%)은 그렇지 않은편이다. 25명(12.0%)는 그런편이다 라고 응답함. 11명(5.3%)의 경우 동의서 제출에 대해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음.

<표 3-17> 구직 시 어려움 : 동의서 제출

동의서 제출의 어려움	빈도(명)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132	63.5
그렇지않은편이다	40	19.2
그런편이다	25	12.0
매우그렇다	11	5.3
전체	208	100.0

2. 낮은 보수

구직시 낮은 보수로 인한 어려움의 경우 92명(44.4%)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61명(29.5%)의 경우 그렇지 않은 편이다 라고 응답하여 전체 153명(73.9%)는 보수로 인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도별 최저임금을 따르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 사료됨. 다만, 48명(23.2%)는 그런편이다, 6명(2.9%)는 매우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의 반영이 미흡하거나 기대되는 임금수준이 높아진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표 3-18> 구직 시 어려움 : 낮은 보수

낮은 보수로 인한 어려움	빈도(명)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92	44.4
그렇지않은편이다	61	29.5
그런편이다	48	23.2
매우그렇다	6	2.9
전체	207	100.0

3. 학력 부족

구직 시 학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조사대상자 117명(56.5%)은 전혀 그렇지 않다, 44명(21.3%)은 그렇지 않은편이다라고 답해 조사대상자 161명(77.8%)의 경우 학력이 구직에 어려움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함. 반면에 35명(16.9%)은 학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편이다 라고 응답하고 1명(5.3%)은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함.

<표 3-19> 구직 시 어려움 : 학력부족

학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빈도(명)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117	56.5
그렇지않은편이다	44	21.3
그런편이다	35	16.9
매우그렇다	11	5.3
전체	207	100.0

4. 직장경험의 부족

구직 시 직장 경험이 부족이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80명(38.6%)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50명(24.2%)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함. 반면 61명(29.5%)은 그런편이다. 16명(7.7%)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77명(37.2%)가 직장경험의 부족이 구직 시 어려움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표 3-20> 구직 시 어려움 : 직장 경험의 부족

직장경험의 부족	빈도(명)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80	38.6
그렇지않은편이다	50	24.2
그런편이다	61	29.5
매우그렇다	16	7.7
전체	207	100.0

5. 근로환경이나 시간

조사응답자 중 90명(43.7%)이 근로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 구직 시 어려움을 겪은편이라고 응답하였고, 그중 12명(5.8%)은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응답함. 반면 62명(30.1%)은 전혀 그렇지 않다, 54명(26.2%)은 그렇지 않은 편이라 응답함. 이는 학교 등교 문제나 청소년 근로시간등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근로시간이나 환경에 제약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

<표 3-21> 구직 시 어려움 : 근로 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음

근로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음	빈도(명)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62	30.1
그렇지않은편이다	54	26.2
그런편이다	78	37.9
매우그렇다	12	5.8
전체	206	100.0

6. 기술, 자격의 부족

기술, 자격의 부족으로 인해 구직 시 어려움 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해 조사대상자 중 82명(39.8%)가 전혀그렇지 않다. 58명(28.2%)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라고 답함. 이는 청소년 구직자 대부분의 단순 서비스 제공, 단순사무나 단순노동을 요하는 일(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경향으로 기술이나 자격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반면 54명(26.2%)는 그런편이다. 12명(5.8%)는 매우 그런편이다 라고 답해 청소년들이 구직 시 기술, 자격의 부족으로 인해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22> 구직 시 어려움 : 기술, 자격의 부족

기술, 자격의 부족	빈도(명)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82	39.8
그렇지않은편이다	58	28.2
그런편이다	54	26.2
매우그렇다	12	5.8
전체	206	100.0

7. 건강상태

조사대상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 구직 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130명(63.1%)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고 59명(28.6%)은 그렇지않은편이다라고 답해 189명(91.7%)이 건강상태가 구직에 어려움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답하였음. 반면 13명(6.3%)는 그런편이다. 4명(1.9%)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해 청소년의 건강상태가 구직 시 고려되는 사항임을 알 수 있음.

<표 3-23> 구직 시 어려움 :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빈도(명)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130	63.1
그렇지않은편이다	59	28.6
그런편이다	13	6.3
매우그렇다	4	1.9
전체	206	100.0

8. 적성파악

청소년의 구직 시 자신의 적성파악 여부에 따른 어려움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100명(48.5%)이 전혀그렇지 않다. 56명(27.2%)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함. 반면 42명(20.4%)은 그런편이다. 8명(3.9%)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해 구직 시 적성에 따라 구직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24> 구직 시 어려움 : 적성파악의 부족

적성파악부족	빈도(명)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100	48.5
그렇지않은편이다	56	27.2
그런편이다	42	20.4
매우그렇다	8	3.9
전체	206	100.0

9. 취업정보의 부족

구직 시 취업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에서 8명(3.9%)이 매우 그렇다, 54명(26.2%)가 그런편이다라고 답함. 반면 96명(46.6%)는 전혀그렇지 않다. 48명(23.3%)는 그렇지않은편이다라고 답해 취업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는 온라인을 통해 여러 정보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이유로 추측됨.

<표 3-25> 구직 시 어려움 : 취업정보의 부족

취업정보 부족	빈도(명)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96	46.6
그렇지않은편이다	48	23.3
그런편이다	54	26.2
매우그렇다	8	3.9
전체	206	100.0

10. 기타

기타 응답으로는 낮은 연령으로 인하여 일(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현재 근로기준법상 청소년근로연령은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가능하며 만 13세~14세의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이 있어서 근로가 가능함. 또한 만 18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연령에 따른 근로 가능 여부가 달라 낮은 연령이 구직 시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여긴다고 판단됨.

<표 3-26> 구직 시 어려움 : 기타 응답

기타응답	빈도(명)	퍼센트(%)
나이가 어려서	1	100
전체	206	100.0

제4절 조사대상자의 근로 정보(지식)관련

조사대상자의 근로정보(지식) 관련된 응답으로 10개 문항 중 10문제를 모두 맞춘 대상자는 11명(5.3%)이었으며, 4~6개를 맞춘 빈도가 92명(44.2%), 7개~9개는 50명(24.0%), 1~3개는 48명(23.1%)이며, 하나도 맞추지 못한 대상자가 7명(3.4%)이었음.

<표 3-27> 근로정보(지식)관련

구분	맞다	틀리다	잘 모르겠다
1)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서류는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이다	153 (73.6)	16 (7.7)	39 (18.8)
2) 다음 중 18세 미만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종에는 만화방, PC방(종합게임장)이 있다	104 (50.2)	45 (21.7)	58 (28.0)
3)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이다	96 (46.2)	36 (17.3)	76 (36.5)
4) 1주일에 2일 또는 3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그 근로시간을 합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110 (52.9)	20 (9.6)	78 (37.5)
5) 1주일에 15시간씩만 근무해도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109 (52.7)	16 (7.7)	82 (39.6)
6) 일 시작 전에 청소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123 (59.7)	28 (13.6)	55 (26.7)
7) 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이다	171 (82.6)	11 (5.3)	25 (12.1)
8)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3일 이상 지각을 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41 (19.7)	67 (32.2)	100 (48.1)
9)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75 (36.1)	27 (13.0)	106 (51.0)
10) 노동문제와 관련해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대표 신고전화는 1388이다	102 (49.0)	25 (12.0)	81 (38.9)

<표 3-28> 근로정보(지식)관련_응답자별 맞춘 개수

구분	빈도(명)	퍼센트(%)	평균(표준편차)
0개	7	3.4	5.21개 (2.45개)
1~3개	48	23.1	
4~6개	92	44.2	
7~9개	50	24.0	
10개(만점)	11	5.3	
전체	208	100.0	

1.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서류는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이다

근로기준법 66조 연소자 증명서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정보에 대해 조사대상자 중 153명(73.6%)이 맞다, 16명(7.7%)은 틀리다라고 응답함. 또한 39명(18.8%)은 모른다고 응답함.

<표 3-29> 근로정보(지식관련)_서류

내용	빈도(명)	퍼센트(%)
맞다	153	73.6
틀리다	16	7.7
모르겠다	39	18.8
전체	208	100.0

2. 18세 미만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종에는 만화방, PC방(종합게임장)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보건·의료·보도·취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갱내(坑內)에서 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출입·고용금지업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에 대해 조사응답자의 104명(50.2%)은 맞다라고 응답하여 알고 있었으며, 45명(21.7%)은 틀리다, 58명(28.0%)은 모르겠다고 대답하여 명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표 3-30> 근로정보(지식관련)_업종

내용	빈도(명)	퍼센트(%)
맞다	104	50.2
틀리다	45	21.7
모르겠다	58	28.0
전체	207	100.0

3.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 69조(근로시간)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의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이에 대해 96명(46.2%)은 맞다, 36명(17.3%)은 틀리다, 76명(36.5%)은 모르겠다고 응답함.

<표 3-31> 근로정보(지식관련)_근로시간

내용	빈도(명)	퍼센트(%)
맞다	96	46.2
틀리다	36	17.3
모르겠다	76	36.5
전체	208	100.0

4. 1주일에 2일 또는 3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그 근로시간을 합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요건은 첫째,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둘째로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함. 근로 일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을 받아야 함. 이에 대해 110명(52.9%)은 맞다고 응답하였고 20명(9.6%)은 틀리다, 78명(37.5%)은 모르겠다고 응답함.

<표 3-32> 근로정보(지식관련)_주휴일

내용	빈도(명)	퍼센트(%)
맞다	110	52.9
틀리다	20	9.6
모르겠다.	78	37.5
전체	208	100.0

5. 1주일에 15시간씩만 근무해도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의 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대해 109명(52.7%)은 맞다, 16명(7.7%)은 틀리다, 82명(39.6%)은 모르겠다고 응답함.

<표 3-33> 근로정보(지식관련)_퇴직금

내용	빈도(명)	퍼센트(%)
맞다	109	52.7
틀리다	16	7.7
모르겠다	82	39.6
전체	207	100.0

6. 일 시작 전에 청소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조회, 전달, 교육등)과 정리(마무리)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됨. 이에 대해 123명(59.7%)은 맞다, 28명(13.6%)은 틀리다, 55명(26.7%)은 모르겠다고 응답함.

<표 3-34> 근로정보(지식관련)_업무 준비시간

내용	빈도(명)	퍼센트(%)
맞다	123	59.7
틀리다	28	13.6
모르겠다	55	26.7
전체	206	100.0

7.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2021년은 8,720원,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임. 이에 대해 171명(59.7%)은 맞다, 11명(13.6%)은 틀리다, 25명(26.7%)은 모르겠다고 응답함.

<표 3-35> 근로정보(지식관련)_최저시급

내용	빈도(명)	퍼센트(%)
맞다	171	59.7
틀리다	11	13.6
모르겠다	25	26.7
전체	207	100.0

8.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3일 이상 지각을 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각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에 대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대해 41명(19.7%)은 맞다, 67명(32.2%)은 틀리다, 100명(48.1%)은 모르겠다고 응답함.

<표 3-36> 근로정보(지식관련)_주휴수당

내용	빈도(명)	퍼센트(%)
맞다	41	19.7
틀리다	67	32.2
모르겠다	100	48.1
전체	208	100.0

9.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임. 이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근무 중이 아닌 회식자리, 출퇴근 시, 교육을 받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있음. 이에 대해 75명(36.1%)은 맞다, 27명(13.0%)은 틀리다, 106명(51.0%)은 모르겠다고 응답함.

<표 3-37> 근로정보(지식관련)_산재보상

내용	빈도(명)	퍼센트(%)
맞다	75	36.1
틀리다	27	13.0
모르겠다	106	51.0
전체	208	100.0

10. 노동문제와 관련해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극한 사항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대표 신고전화는 1388이다

청소년전화 1388의 경우 위기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는 상담 채널이며, 온라인상담 서비스(카카오톡·페이스북·문자상담 및 전화상담)를 제공함. 이에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된 상담도 진행하고 있음. 이에 대해 102명(49.0%)는 모른다, 25명(12.0%)는 틀리다, 81명(38.9%)는 모르겠다고 응답함.

<표 3-38> 근로정보(지식관련)_부당노동행위 신고

내용	빈도(명)	퍼센트(%)
맞다	102	49.0
틀리다	25	12.0
모르겠다	81	38.9
전체	208	100.0

제5절 조사대상자의 최근 근로 경험

1. 근로형태

조사대상자 중 27명(13.4%)은 정규직의 형태로, 46명(22.9%)은 비정규직(전일근무), 128명(63.7%)은 비정규직(파트타임)으로 근로하고 있어 청소년의 근로형태가 다소 불안정함을 알 수 있음.

<표 3-39> 최근 근로 경험_근로형태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정규직	27	13.4
비정규직(전일근무)	46	22.9
비정규직(파트타임)	128	63.7
전체	201	100.0

2. 일일 평균 근로시간

조사대상자 중 일일 평균근로시간은 4시간 이상~8시간 미만이 111명(55.8%)으로 가장 높았으며 10시간 이상이 33명(16.6%),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이 28명(14.1%), 4시간 미만이 27명(13.6%) 순이었음.

<표 3-40> 최근 근로 경험_일일 평균 근로시간

구분	빈도(명)	퍼센트(%)
4시간 미만	27	13.6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11	55.8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28	14.1
10시간 이상	33	16.6
전체	199	100.0

1) 만 18세 미만 응답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

만 18세 미만 응답자의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4시간 이상~8시간 미만이 64명(64.0%)으로 가장 높았으며, 10시간 이상이 15명(15.0%), 4시간 미만이 14명(14.0%),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이 7명(7.0%) 순이었음. 근로기준법상 청소년의 경우 1일 7시간, 하루 1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그 이상 근로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 22명(22%)이나 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표 3-41> 최근 근로 경험_만 18세 미만 응답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

근로형태	빈도(명)	퍼센트(%)
4시간 미만	14	14.0
4시간 이상~8시간미만	64	64.0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7	7.0
10시간 이상	15	15.0
전체	100	100.0

3. 일주일 총 근로시간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1일 7시간, 일주일 35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 1일 1시간, 일주일에 총 5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함. 조사응답자 중 8시간 이상~16시간 미만 근로자가 74명(37.8%)으로 가장 높았으며 16시간 이상~24시간 미만, 8시간 미만이 각 35명(17.9%), 40시간 이상이 26명(13.3%), 24시간 이상~32시간 미만이 14명(7.1%), 32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이 12명(6.1%) 순이었음.

<표 3-42> 최근 근로 경험_일주일 총 근로시간

구분	빈도(명)	퍼센트(%)
8시간 미만	35	17.9
8시간 이상 ~ 16시간 미만	74	37.8
16시간 이상 ~ 24시간 미만	35	17.9
24시간 이상 ~ 32시간 미만	14	7.1
32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12	6.1
40시간 이상	26	13.3
전체	196	100.0

1) 만 18세 미만 응답자 일주일 총 근로시간

조사응답자 중 만 18세 미만 일주일 총 근로시간에 대한 응답으로 8시간 이상~16시간 미만이 37명(38.5%)으로 가장 높았으며, 8시간 미만이 25명(26.0%), 16시간 이상~24시간 미만이 13명(13.5%), 40시간 이상 11명(11.5%), 32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이 6명(6.3%), 24시간 이상~32시간 미만 4명(4.2%) 순이었음.

<표 3-43> 최근 근로 경험_만18세 미만 응답자 일주일 총 근로시간

일주일 총 근로시간	빈도(명)	퍼센트(%)
8시간 미만	25	26.0
8시간이상~16시간미만	37	38.5
16시간이상~24시간미만	13	13.5
24시간이상~32시간미만	4	4.2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6	6.3
40시간 이상	11	11.5
전체	96	100.0

4. 평균 근무기간

조사대상자의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응답으로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 62명(30.7%)으로 가장 높았으며,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36명(17.8%), 6개월 이상~1년 미만 35명(17.3%), 1개월 미만 33명(16.3%), 1주 미만 21명(10.4%), 1년 이상이 15명(7.4%) 순이었음.

<표 3-44> 최근 근로 경험_평균 근무기간

구분	빈도(명)	퍼센트(%)
1주 미만	21	10.4
1개월 미만	33	16.3
1개월 ~ 3개월 미만	62	30.7
3개월 ~ 6개월 미만	36	17.8
6개월 ~ 1년 미만	35	17.3
1년 이상	15	7.4
전체	202	100.0

5. 시간당 급여

조사대상자의 시간당 급여가 80명(41.7%)이 10,000원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77명(40.1%)이 9,160원 이상~10,000원 미만, 18명(9.4%)이 8,500원 이상~9,160원 미만, 8,500원 미만이 17명(8.9%) 순이었음.

<표 3-45> 최근 근로 경험_시간당 급여

구분	빈도(명)	퍼센트(%)
8,500원 미만	17	8.9
8,500원 이상 ~ 9,160원 미만	18	9.4
9,160원 이상 ~ 10,000원 미만	77	40.1
10,000원 이상	80	41.7
전체	192	100.0

6.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시간당 임금

조사대상자 중 174명이 응답하였으며, 그중 9,160원 이상~10,000원 미만이 56명(32.2%)으로 가장 높았으며 8,500원 미만이 45명(25.9%), 8,500원 이상~9,160원 미만이 39명(22.4%), 10,000원 이상이 34명(19.5%) 순이었음.

<표 3-46> 최근 근로 경험_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시간당 임금

구분	빈도(명)	퍼센트(%)
8,500원 미만	45	25.9
8,500원 이상 ~ 9,160원 미만	39	22.4
9,160원 이상 ~ 10,000원 미만	56	32.2
10,000원 이상	34	19.5
전체	174	100.0

7. 월 평균 소득 금액(월급)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월급)은 50만원 이하가 92명(44.9%)으로 가장 높았으며, 100만원 이하가 71명(34.6%), 150만원 이하가 25명(12.2%), 200만원 이상이 10명(4.9%), 200만원 이하가 7명(3.4%) 순이었음.

<표 3-47> 최근 근로 경험_월 평균 소득금액(월급)

구분	빈도(명)	퍼센트(%)
50만 원 미만	92	44.9
50만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71	34.6
100만원 이상 ~ 150만 원 미만	25	12.2
150만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7	3.4
200만 원 이상	10	4.9
전체	205	100.0

8. 한달 필요 생활비

조사대상자의 97명(47.1%)가 한 달 필요생활비로 50만원 이상 필요하다 응답하였고, 67명(32.5%)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은 25명(12.1%), 300만원 이상은 11명(5.3%), 200만원 이상은 6명(2.9%)으로 가장 적었음.

<표 3-48> 최근 근로 경험_월 정적 생활비

구분	빈도(명)	퍼센트(%)
50만원 미만	97	47.1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67	32.5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25	12.1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6	2.9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11	5.3
전체	2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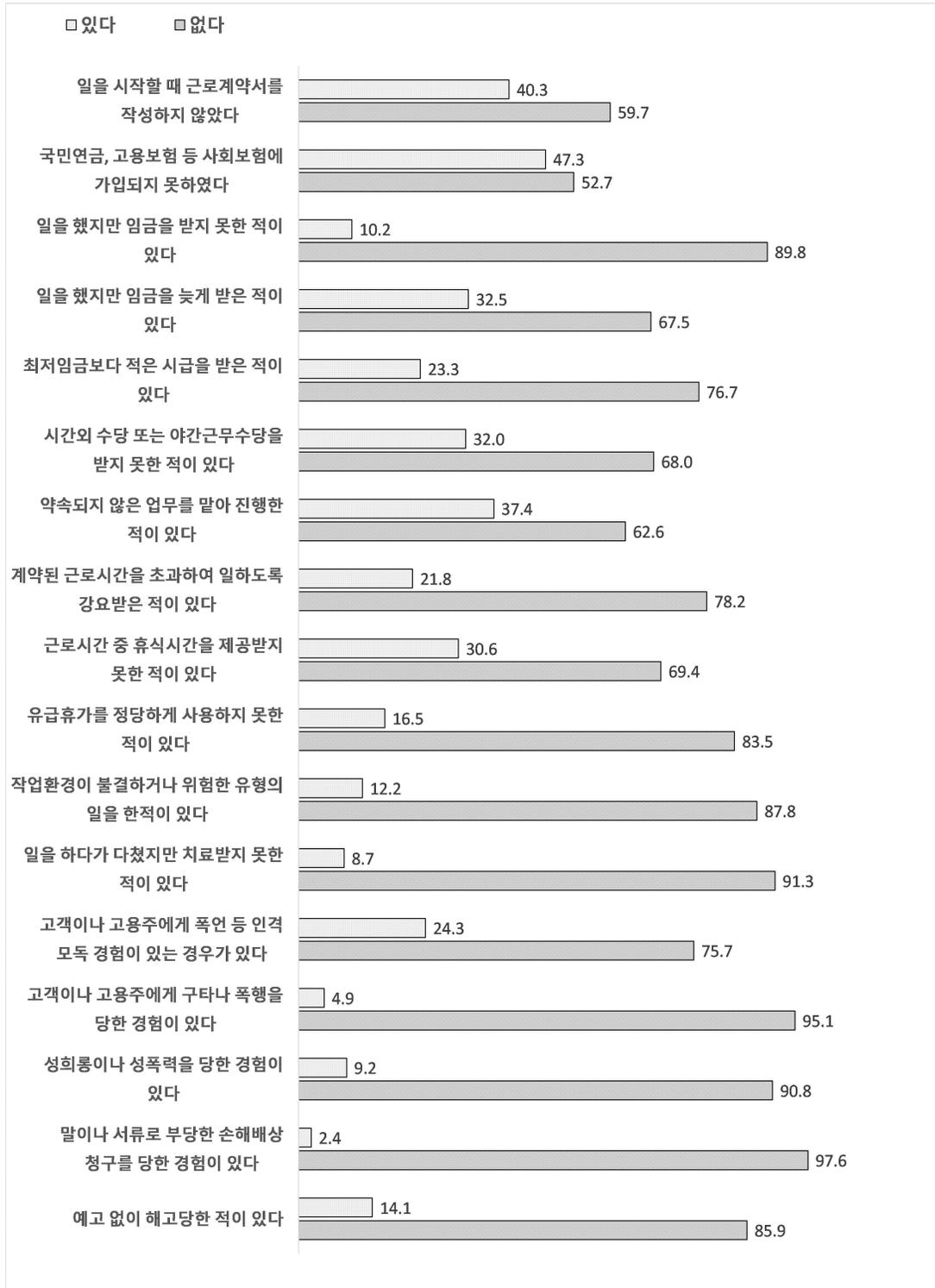
제6절 부당대우 경험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응답자가 경험한 부당대우 중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경험이 9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이 83명으로 뒤를 이었음. 그 밖에 약속되지 않은 업무를 진행한 경험, 임금체불과 시간외수당 또는 야간근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을 미제공 등이 뒤를 이었음. 고객이나 고용주에게 폭언 등 인격모독의 경험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미행 등의 부당대우 경험에 대해서도 ‘있다’ 라고 응답하였음.

<표 3-49> 부당대우 경험

구분	있다		없다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83	40.3	123	59.7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못하였다	97	47.3	108	52.7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21	10.2	185	89.8
일을 했지만 임금을 늦게 받은 적이 있다	67	32.5	139	67.5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적이 있다	48	23.3	158	76.7
시간외 수당 또는 야간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66	32.0	140	68.0
약속되지 않은 업무를 맡아 진행한 적이 있다	77	37.4	129	62.6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45	21.8	161	78.2
근로시간 중 휴식시간을 제공받지 못한 적이 있다	63	30.6	143	69.4
유급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	34	16.5	172	83.5
작업환경이 불결하거나 위험한 유형의 일을 한적이 있다	25	12.2	180	87.8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치료받지 못한 적이 있다	18	8.7	188	91.3
고객이나 고용주에게 폭언 등 인격 모독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있다	50	24.3	156	75.7
고객이나 고용주에게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10	4.9	196	95.1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19	9.2	187	90.8
말이나 서류로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험이 있다	5	2.4	201	97.6
예고 없이 해고당한 적이 있다	29	14.1	177	85.9

[그림 3-19] 부당대우 경험



1.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 중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험을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83명(40.3%), 없다고 응답한 인원은 123명(59.7%)임.

<표 3-50> 부당대우경험_근로계약서 미작성

내용	빈도(명)	퍼센트(%)
있다	83	40.3
없다	123	59.7
전체	206	100.0

2.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못하였다

조사대상자중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97명(47.3%), 없다고 응답한 인원은 108명(52.7%)임.

<표 3-51> 부당대우경험_사회보험 미가입

내용	빈도(명)	퍼센트(%)
있다	97	47.3
없다	108	52.7
전체	205	100.0

3.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에 대해 21명(10.2%)은은있다, 185명(89.8%)은 없다고 응답함.

<표 3-52> 부당대우경험_임금체불(미지급)

내용	빈도(명)	퍼센트(%)
있다	21	10.2
없다	185	89.8
전체	206	100.0

4. 일을 했지만 임금을 늦게 받은 적이 있다

임금을 늦게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에 대해 67명(32.5%)은 있다, 139명(67.5%)은 없다고 응답함.

<표 3-53> 부당대우경험_임금체불(지연지급)

내용	빈도(명)	퍼센트(%)
있다	67	32.5
없다	139	67.5
전체	206	100.0

5.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적이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에 대해 48명(23.3%)은 있다, 158명(76.7%)은 없다고 응답함.

<표 3-54> 부당대우경험_최저임금 미준수

내용	빈도(명)	퍼센트(%)
있다	48	23.3
없다	158	76.7
전체	206	100.0

6. 시간 외 수당 또는 야간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시간 외 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경험에 대해 66명(32.0%)은 있다, 140명(68.0%)은 없다고 응답함.

<표 3-55> 부당대우경험_추가근무에 따른 수당 미지급

내용	빈도(명)	퍼센트(%)
있다	66	32.0
없다	140	68.0
전체	206	100.0

7. 약속되지 않은 업무를 맡아 진행한 적이 있다

약속되지 않은 업무를 진행한 경험에 대해 77명(37.4%)은 있다, 129명(62.6%)은 없다고 응답함.

<표 3-56> 부당대우경험_부당업무지시

내용	빈도(명)	퍼센트(%)
있다	77	37.4
없다	129	62.6
전체	206	100.0

8.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는 경험에 대해 45명(21.8%)은 있다, 161명(78.2%)은 없다고 응답함.

<표 3-57> 부당대우경험_추가업무강요

내용	빈도(명)	퍼센트(%)
있다	45	21.8
없다	161	78.2
전체	206	100.0

9. 근로시간 중 휴식시간을 제공 받지 못한 적이 있다

근로시간 중 휴식시간을 제공받지 못한 경험에 대해 63명(30.6%)은 있다, 143명(69.4%)은 없다고 응답함.

<표 3-58> 부당대우경험_휴게시간 미준수

내용	빈도(명)	퍼센트(%)
있다	63	30.6
없다	143	69.4
전체	206	100.0

10. 유급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

유급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험에 대해 34명(16.5%)은 있다, 172명(83.5%)은 없다고 응답함.

<표 3-59> 부당대우경험_유급휴가 미지급

내용	빈도(명)	퍼센트(%)
있다	34	16.5
없다	172	83.5
전체	206	100.0

11. 작업환경이 불결하거나 위험한 유형의 일을 한 적이 있다

작업환경이 불결하거나 위험한 유형의 일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에 대해 25명(12.2%)은 있다, 180명(87.8%)은 없다고 응답함.

<표 3-60> 부당대우경험_위험한 유형의 업무지시

내용	빈도(명)	퍼센트(%)
있다	25	12.2
없다	180	87.8
전체	205	100.0

12.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치료받지 못한 적이 있다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치료받지 못한 경험에 대해 18명(8.7%)은 있다, 188명(91.3%)은 없다고 응답함.

<표 3-61> 부당대우경험_부상 후 미치료

내용	빈도(명)	퍼센트(%)
있다	18	8.7
없다	188	91.3
전체	206	100.0

13. 고객이나 고용주에게 폭언 등 인격모독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있다

고객이나 고용주에게 폭언 등 인격모독 경험에 대해 50명(24.3%)는 있다, 156명(75.7%)는 없다고 응답함.

<표 3-62> 부당대우경험_인격모독

내용	빈도(명)	퍼센트(%)
있다	50	24.3
없다	156	75.7
전체	206	100.0

14. 고객이나 고용주에게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고객이나 고용주에게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에 대해 10명(4.9%)는 있다, 196명(95.1%)는 없다고 응답함.

<표 3-63> 부당대우경험_구타나 폭행

내용	빈도(명)	퍼센트(%)
있다	10	4.9
없다	196	95.1
전체	206	100.0

15.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험에 대해 19명(9.2%)는 있다, 187명(90.8%)는 없다고 응답함.

<표 3-64> 부당대우경험_성희롱이나 성폭력

내용	빈도(명)	퍼센트(%)
있다	19	9.2
없다	187	90.8
전체	206	100.0

16. 말이나 서류로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험이 있다

말이나 서류로 부당한 손해배상 청고를 당한 경험에 대해 5명(2.4%)는 있다, 201명(97.6%)는 없다고 응답함.

<표 3-65> 부당대우경험_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	빈도(명)	퍼센트(%)
있다	5	2.4
없다	201	97.6
전체	206	100.0

17. 예고 없이 해고 당한 적이 있다

예고없는 해고를 당한 경험에 대해 29명(14.1%)는 있다, 177명(85.9%)는 없다고 응답함.

<표 3-66> 부당대우경험_예고 없는 해고

내용	빈도(명)	퍼센트(%)
있다	29	14.1
없다	177	85.9
전체	206	100.0

제7절 부당대우에 대한 대처

1. 대응방식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대응방식으로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가 73명(36.7%)으로 가장 높았으며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의견이 56명(28.1%)이었음. 이어 기타의견(부당한 일을 당해지 않았다, 다투다 해고당했다, 복수했다, 대화로 해결했다) 등이 43명(21.6%), ‘개인적으로 항의하였다’ 14명(7.0%), ‘친구, 지인,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았다’ 6명(3.0%),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5명(2.5%), ‘상담소나 외부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았다’가 2명(1.0%)으로 뒤를 이었음.

<표 3-67> 부당대우 경험 시 대처

구분	빈도(명)	퍼센트(%)
참고 계속 일했다	56	28.1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	73	36.7
개인적으로 항의하였다	14	7.0
친구, 지인,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았다	6	3.0
상담소나 외부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았다	2	1.0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5	2.5
기타	43	21.6
전체	199	100.0

2.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한 분야

상담이 필요한 분야로는 ‘임금문제’가 80명(41.7%)로 가장 높았으며 ‘근무시간에 대한 문제’ 36명(18.8%), ‘작업환경의 문제’ 32명(16.7%),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18명 9.4%),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가 7명(3.6%) 순이었음.

<표 3-68> 부당노동행위 관련 상담 및 도움을 받고 싶은 분야

구분	빈도(명)	퍼센트(%)
임금문제	80	41.7
근무시간에 대한 문제	36	18.8
작업환경의 문제	32	16.7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18	9.4
산업재해 문제	7	3.6
기타	19	9.9
전체	192	100.0

3. 도움을 요청하는 곳

청소년이 근로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친구나 지인’이 118명(63.8%)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 18명(9.7%), 대전노동권익센터(5.4%)로 뒤를 이었으며, 꿈드림센터 8명(4.3%), 청소년복지시설선생님 7명(3.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명(3.2%)순이었고, 그밖에 경찰서 4명(2.2%), 기타로 부모님 1명, 일자리 동료 1명 등이었음.

<표 3-69> 사업주의 부당한 고용행위 인식시 상담 대상

구분	빈도(명)	퍼센트(%)
친구나 지인	118	63.8
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	18	9.7
대전노동권익센터	10	5.4
청소년복지시설선생님	7	3.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	3.2
꿈드림센터	8	4.3
경찰서	4	2.2
상담할 사람이 없다	8	4.3
기타	6	3.2
전체	185	100.0

4.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에 대해 69명(33.3%)은 ‘보통이다’, 63명(30.4%)는 ‘조금안다’, 35명(16.9%)은 ‘조금모른다’, 34명(16.4%)은 매우모른다라고 응답하였고, 6명(2.9%)만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함. 이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에 대해 알고 있다는 긍정응답, 부정응답과 보통이다가 33.3%로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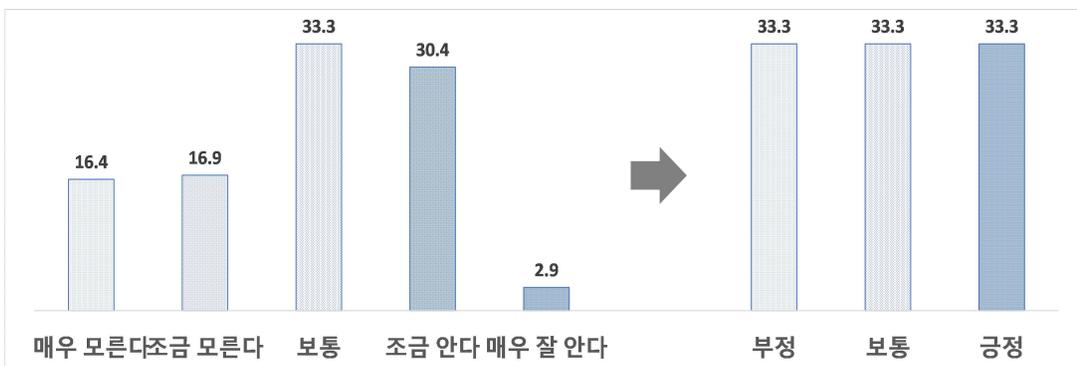
<표 3-70> 주관적인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해 인식수준_1

구분	빈도(명)	퍼센트(%)	평균
매우 모른다	34	16.4	2.86
조금 모른다	35	16.9	
보통이다	69	33.3	
조금 안다	63	30.4	
매우 잘 안다	6	2.9	
전체	207	100.0	

<표 3-71> 주관적인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해 인식수준_2

매우 모른다	조금 모른다	보통이다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부정	보통	긍정	평균
34 (16.4)	35 (16.9)	69 (33.3)	63 (30.4)	6 (2.9)	69 (33.3)	69 (33.3)	69 (33.3)	2.86

[그림 3-20] 주관적인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해 인식수준_2



5. 제일 필요한 정보

근로에 대해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일자리 정보로 63명(33.5%)이 응답하였고, 임금관련정보 42명(22.3%), 노동법 정보 28명(14.9%), 기술습득정보 23명(12.2%), 자신의 성격, 적성 등의 검사 20명(10.6%), 이어 노동인권관련 정보 11명(5.9%) 응답함. 반면 기타의 견으로 ‘필요한 정보없음’ 으로 응답한 인원이 1명(0.5%)이었음.

<표 3-72> 직업 관련 정보 중 제일 필요 한 정보

구분	빈도(명)	퍼센트(%)
임금 관련 정보	42	22.3
기술 습득 정보	23	12.2
일자리 정보	63	33.5
노동법 정보	28	14.9
노동인권 관련 정보	11	5.9
자신의 성격, 적성 등의 검사	20	10.6
기타	1	0.5
전체	188	100.0

6. 노동법이나 노동인권 교육 수료 여부

노동법이나 노동인권 교육 수료 여부에 대하여 121명(58.5%)이 있다, 86명(41.5%)이 없다고 응답함.

<표 3-73> 노동법이나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경험

구분	빈도(명)	퍼센트(%)
있다	121	58.5
없다	86	41.5
전체	207	100.0

7. 노동법 노동인권교육 수료 기관

노동법 노동인권교육 수료기관으로 학교 80명(46.2%)이 가장 많았고 학교밖지원센터 30명(17.3%), 청소년쉼터 29명(16.8%), 상담복지센터(1388) 11명(6.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고용노동청이 각각 5명(2.9%) 순이었고, 법무부, 구청, 시청등이 각각 2명(1.2%), 대전시노동권익센터 1명(0.6%)으로 응답함. 그밖에 기타의견으로 공방 2명, 특별교육 1명, 기업 1명이 있었음.

<표 3-74> 교육 기관(100% 비율)

구분	빈도(명)	퍼센트(%)
청소년쉼터	29	16.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5	2.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30	17.3
상담복지센터(1388)	11	6.4
학교	80	46.2
경찰서	3	1.7
대전시노동권익센터	1	0.6
고용노동청(고용복지센터)	5	2.9
법무부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2	1.2
구청, 시청	2	1.2
기타	5	2.9
전체	173	100.0

제8절 노동관련교육이 주관적 노동지식 인식 수준의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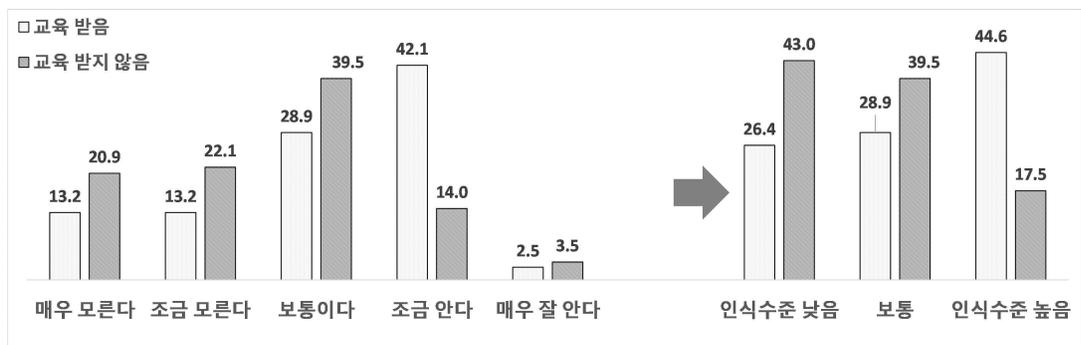
1. 노동 관련 교육이 주관적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노동관련 교육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노동관련 지식 인식수준이 26.4%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노동관련 지식 인식수준이 43.0%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노동관련 교육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노동관련 지식 인식수준이 44.6%가 높음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17.5%가 높음으로 나타남.

<표 3-75> 노동 관련 교육이 주관적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구분	교육 받음		교육 받지 않음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우 모른다	16	13.2	18	20.9
조금 모른다	16	13.2	19	22.1
보통이다	35	28.9	34	39.5
조금 안다	51	42.1	12	14.0
매우 잘 안다	3	2.5	3	3.5
전체	121	100.0	86	100.0
평균	3.07		2.57	

[그림 3-21] 노동 관련 교육이 주관적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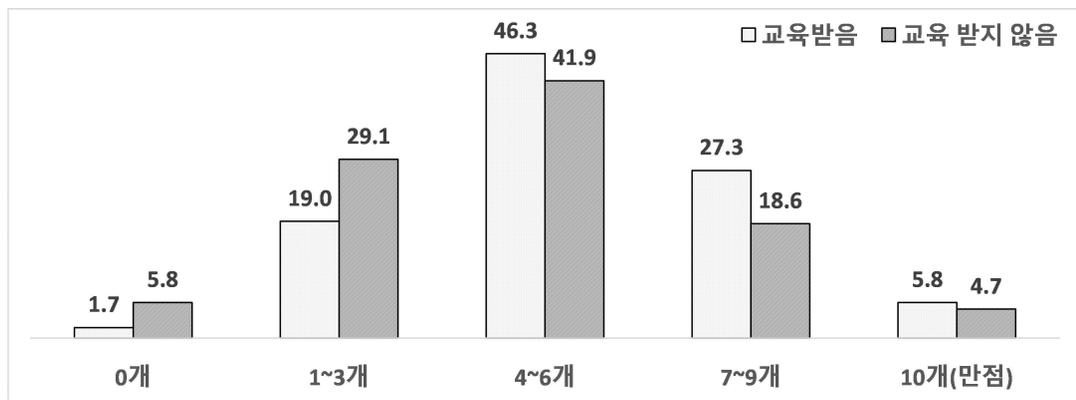
2. 노동 관련 교육과 정답 개수

노동관련 교육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근로정보 지식에 대한 문항에서 10개 모두 맞은 대상자는 121명중 7명(5.8%), 7~9개는 33명(27.3%), 4~6개는 56명(46.3%), 1~3개는 23명(19.0%), 0개는 2명(1.7%)인 반면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10개 모두 맞은 대상자는 86명 중 4명(4.7%), 7~9개는 16명(18.6%), 4~6개는 36명(41.9%), 1~3개는 25명(29.1%), 0개는 5명(5.8%)으로 나타나 교육을 받은 조사대상자의 경우 평균 5.6개를, 교육을 받지 않은 조사대상자의 경우 평균 4.6개를 맞추었음.

<표 3-76> 노동 관련 교육과 정답 개수

구분	교육 받음		교육 받지 않음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0개	2	1.7	5	5.8
1~3개	23	19.0	25	29.1
4~6개	56	46.3	36	41.9
7~9개	33	27.3	16	18.6
10개(만점)	7	5.8	4	4.7
전체	121	100.0	86	100.0
평균	5.6개		4.6개	

[그림 3-22] 노동 관련 교육과 정답 개수



3. 노동 관련 지식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과 정답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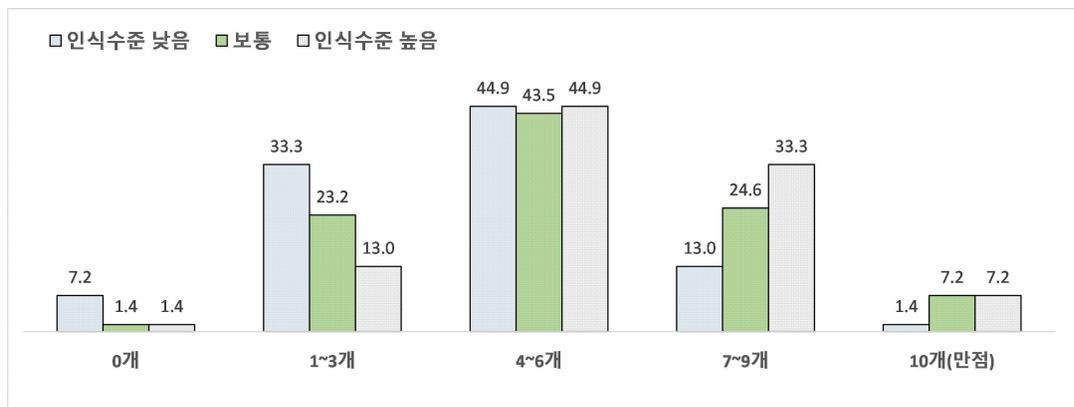
조사대상자 중 노동관련 지식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이 낮은 경우 평균 4.10개의 정답을 맞추었고 보통의 경우 5.51개, 인식수준이 높은 경우 6.00개의 문항을 맞추었음. 이는 노동 관련 교육은 응답자(청소년)의 노동 법 관련 주관적 인식수준을 높였으며(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실제 노동 관련 교육을 이수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노동 관련 문제의 정답률 및 정답 개수가 많음. 또한 노동법 관련 주관적 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문제 정답 개수가 많아짐

<표 3-77> 노동 관련 지식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과 정답 개수

구분	인식수준 낮음		보통		인식수준 높음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0개	5	7.2	1	1.4	1	1.4
1~3개	23	33.3	16	23.2	9	13.0
4~6개	31	44.9	30	43.5	31	44.9
7~9개	9	13.0	17	24.6	23	33.3
10개(만점)	1	1.4	5	7.2	5	7.2
전체	69	100.0	69	100.0	69	100.0
평균	4.10개		5.51개		6.00개	

* 인식수준 낮음 = 매우 모른다 + 조금 모른다 / 인식수준 높음 = 매우 잘 안다 + 조금 안다

[그림 3-23] 노동 관련 지식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과 정답 개수



본 설문조사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60명(23.8%)이고 여성이 148명(71.2%)으로 여성 쪽으로 많이 편중된 편이다. 연령은 18세를 기준으로 미만이 103명(49.5%), 이상이 105명(50.5%)으로 분포가 비슷하였으며, 학력은 고 중퇴 이하가 128명(61.6%)이었고 고졸 이상이 80명(38.4%)으로 고 중퇴 이하가 더 많았다. 가출 상태는 현재 가출 중인 청소년이 17명(8.2%)이었고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은 191명(91.8%)이다.

두 번째로 청소년의 일자리 관련 현황과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최초로 일을 시작한 연령이 15~18세 미만의 청소년이 124명(6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8세~20세가 52명(25.2%)이었으며, 15세 미만도 23명(11.2%)인 것을 보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71.4%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노동인권 보호를 저연령의 청소년부터 시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조사 대상 중 불법·탈법적인 일을 한 경험도 18명(8.7%)이나 있어 위기청소년들이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빚을 지고 있는 청소년은 28명(14.1%)으로 그 중 1천만원 이상을 빚진 경우도 6명(2.9%)이 되었고, 신용불량자도 16명(8.2%)이나 되었으며, 저축은 70명(36.8%)의 청소년만이 하고 있을 뿐 120명(63.2%)의 청소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은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청소년들의 구직 실태를 살펴보면, 일하고 싶은 곳의 1순위는 패스트푸드점·카페가 19.9%이고, 2순위가 편의점(18%), 3순위가 PC방(13.3%) 순으로 직업관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일자리보다는 단기적인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이며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구직 방법은 온라인업의 경우가 117명으로 65.7%에 달했고, 그 다음이 지인 소개로 47명(26.4%)였다. 이를 볼 때 온라인 상에서의 직업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일하는 이유로 용돈이 필요해서가 50명(29.6%)이고 생활비 마련이 25명(15.1%)이었으며, 구직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돈이 50명(29.6%), 근무 환경이 39명(23.1%), 시간적 여유가 27명(16%)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구직 시의 어려움으로는 근로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음(78명, 37.8%), 직장 경험 부족(61명, 29.5%), 기술·자격 부족(54명, 26.2%), 취업정보 부족(54명, 26.2%) 등을 들고 있다. 그밖에 미성년자로서 부모 동의서를 낼 수 없어서라는 경우도 36명(17.3%)가 나온 것을 보면 미성년자의 구직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도 보인다.

네 번째로 청소년의 노동법규 내지 노동 상식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 총 10문제 중 모두 맞춘 청소년은 11명(5.3%)이고 7문제 이상 맞춘 청소년은 모두 61명(29.3%)이지만, 6문제 이

하로 맞춘 청소년은 총 147명(70.7%)에 달한다. 한 문제도 못 맞춘 청소년도 7명(3.4%)이나 되었다. 제일 많이 틀린 문제는 주휴수당과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종, 청소년 근로시간 순이었다. 청소년들에게 노동법과 노동인권 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들의 최근의 근로 경험을 보면 정규직은 27명(13.4%)인데 반해 전일근무 비정규직은 46명(22.9%)이고, 파트타임 비정규직은 128명(63.7%)에 달한다. 또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116명(57.4%)으로 절반이 넘고, 1년 이상 근무는 15명(7.4%)에 불과하며, 6개월 이상 근무를 다 합쳐도 50명(24.7%) 밖에 안된다. 또 청소년들 그리고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하루 연장근무를 합쳐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중 22명이 10시간 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청소년이 35명으로 18.3%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취업 의지나 직업 경험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직업 체험, 직업훈련의 기회가 적극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 노동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가 절실하다 할 수 있겠다.

여섯 번째로 청소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그에 대한 청소년의 대응방안들을 보면, 우선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별로 4대 보험 미가입(97명, 47.3%), 근로계약서 미작성(83명, 40.3%), 약속되지 않은 업무 수행(77명, 37.4%), 임금 체불(66명, 32.5%) 등이 있으며, 심지어는 임금을 받지 못함(21명, 10.2%), 성희롱과 성폭력(19명, 9.2%)까지 다양한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대처 방안이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73명, 36.7%), 참고 계속 일했다(56명, 28.1%) 등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우가 129명(64.8%)에 달한다는 사실이고, 고용노동청, 경찰, 상담소 등 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11명(5.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를 볼 때 청소년 노동인권이 사각지대에 처해 있으며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청소년 노동인권 에 대한 교육·상담 강화, 청소년 노동현장에 대한 아웃리치 강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일곱 번째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상담과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해 살펴보면, 청소년이 근로 현장에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임금문제(80명, 41.7%), 근무시간 문제(36명, 18.8%), 작업 환경(32명, 16.7%) 등의 순이며,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곳을 보면 친

구나 지인(118명, 63.8%), 고용노동청, 경찰, 노동권익센터 등의 기관(32명, 17.3%),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21명, 11.3%) 등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경험을 보면, 있음이 121명(58.5%)이고, 없음이 80명(41.5%)이며,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 정도는 ‘어느 정도 안다’, ‘보통이다’, ‘잘 모른다’가 똑같이 69명(33.3%)임을 볼 때 노동인권 교육이 계속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육, 상담을 할 때,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 관련 정보를 보면 일자리 정보(63명, 33.5%), 임금 관련 정보(42명, 22.3%), 노동법 정보(28명, 14.9%), 기술 습득 정보(23명, 12.2%) 등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제9절 소결

우선 본 설문조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60명(23.8%)이고 여성이 148명(71.2%)으로 여성 쪽으로 많이 편중된 편이다. 연령은 18세를 기준으로 미만이 103명(49.5%), 이상이 105명(50.5%)으로 분포가 비슷하였으며, 학력은 고 중퇴 이하가 128명(61.6%)이었고 고졸 이상이 80명(38.4%)으로 고 중퇴 이하가 더 많았다. 가출 상태는 현재 가출 중인 청소년이 17명(8.2%)이었고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은 191명(91.8%)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설문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청소년의 일자리 관련 현황과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최초로 일을 시작한 연령이 15~18세 미만의 청소년이 124명(6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8세~20세가 52명(25.2%)이었으며, 15세 미만도 23명(11.2%)인 것을 보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71.4%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노동인권 보호를 저연령의 청소년부터 시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조사 대상 중 불법·탈법적인 일을 한 경험도 18명(8.7%)이나 있어 위기청소년들이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빚을 지고 있는 청소년은 28명(14.1%)으로 그 중 1천만원 이상을 빚진 경우도 6명(2.9%)이 되었고, 신용불량자도 16명(8.2%)이나 되었으며, 저축은 70명(36.8%)의 청소년만이 하고 있을 뿐 120명(63.2%)의 청소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은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의 구직 실태를 살펴보면, 일하고 싶은 곳의 1순위는 패스트푸드점·카페가 19.9%이고, 2순위가 편의점(18%), 3순위가 PC방(13.3%) 순으로 직업관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일자리보다는 단기적인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구직 방법은 온라인업의 경우가 117명으로 65.7%에 달했고, 그 다음이 지인 소개로 47명(26.4%)였다. 이를 볼 때 온라인 상에서의 직업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일하는 이유로 용돈이 필요해서가 50명(29.6%)이고 생활비 마련이 25명(15.1%)이었으며, 구직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돈이 50명(29.6%), 근무 환경이 39명(23.1%), 시간적 여유가 27명(16%)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구직 시의 어려움으로는 근로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음(78명, 37.8%), 직장 경험 부족(61명, 29.5%), 기술·자격 부족(54명, 26.2%), 취업정보 부족(54명, 26.2%) 등을 들고 있다. 그 밖에 미성년자로서 부모 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라는 경우도 36명(17.3%)이 나온 것을 보면 미성년자의 구직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도 보인다.

세 번째로 청소년의 노동법규 내지 노동 상식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 총 10문제 중 모두 맞춘 청소년은 11명(5.3%)이고 7문제 이상 맞춘 청소년은 모두 61명(29.3%)이지만, 6문제 이하로 맞춘 청소년은 총 147명(70.7%)에 달한다. 한 문제도 못맞춘 청소년도 7명(3.4%)이나 되었다. 제일 많이 틀린 문제는 주휴수당과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종, 청소년 근로시간 순이었다. 청소년들에게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청소년들의 최근의 근로 경험을 보면 정규직은 27명(13.4%)인데 반해 전일근무 비정규직은 46명(22.9%)이고, 파트타임 비정규직은 128명(63.7%)으로 비정규직이 약 87%에 달한다. 또 근무 기간은 3개월 미만인 경우가 116명(57.4%)으로 절반이 넘고, 1년 이상 근무는 15명(7.4%)에 불과하며, 6개월 이상 근무를 다 합쳐도 50명(24.7%) 밖에 안된다. 그리고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하루 연장근무를 합쳐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중 22명이 10시간 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청소년이 35명으로 18.3%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취업 의지나 직업 경험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직업 체험, 직업훈련의 기회가 적극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 노동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그에 대한 청소년의 대응 방안들을 보면, 우선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별로 4대 보험 미가입(97명, 47.3%), 근로계약서 미작성(83명, 40.3%), 약속되지 않은 업무 수행(77명, 37.4%), 임금 체불(66명, 32.5%) 등이 있으며, 심지어는 임금을 받지 못함(21명, 10.2%), 성희롱과 성폭력(19명, 9.2%)까지 다양한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대처 방안이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73명, 36.7%), 참고 계속 일했다(56명, 28.1%) 등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우가 129명(64.8%)에 달한다는 사실이고, 고용노동청, 경찰, 상담소 등 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11명(5.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를 볼 때 청소년 노동인권이 사각지대에 처해 있으며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상담 강화, 청소년 노동현장에 대한 아웃리치 강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상담과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해 살펴보면, 청소년이 근로 현장에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임금문제(80명, 41.7%), 근무시간 문제(36명, 18.8%), 작업 환경(32명, 16.7%) 등의 순이며,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곳을 보면 친구나 지인(118명, 63.8%), 고용노동청, 경찰, 노동권익센터 등의 기관(32명, 17.3%),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21명, 11.3%) 등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경험을 보면, 받은 적이 있는경우가 121명(58.5%)이고, 없는 경우가 80명(41.5%)이며,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 정도는 ‘어느 정도 안다’, ‘보통이다’, ‘잘 모른다’가 똑같이 69명(33.3%) 임을 볼 때 노동인권 교육이 계속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육, 상담을 할 때,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 관련 정보를 보면 일자리 정보(63명, 33.5%), 임금 관련 정보(42명, 22.3%), 노동법 정보(28명, 14.9%), 기술 습득 정보(23명, 12.2%) 등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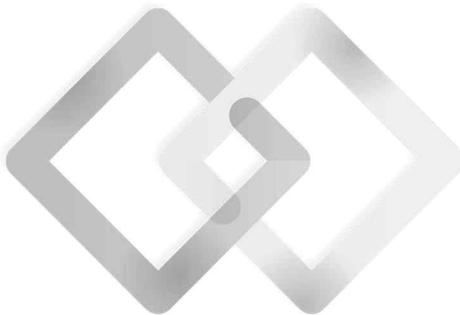
이상에서 볼 때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성인들과 달리 사각지대에 처해 있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노동 조건이나 환경도 매우 열악한 편이다. 특히 가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직접 생계를 꾸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와 같은 노동 환경과 조건에서 특별한 지원을 별도로 받기 어려운 한 개인이 자립에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부담은 1차적으로는 개인에게 주어지지 만 결국은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대전지역 위기청소년의 근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제4장 대전지역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 집담회



제4장 대전지역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 집담회

제1절 집담회 개요

1. 일 시 : 2022. 10. 12(수), 14:00
2. 장 소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9층, 가치 30실
3. 참석자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홍춘기 센터장**, 대전광역시청소년드림인센터 **오재진 소장**,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래숙 센터장**,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강만식 센터장, 대전남자단기청소년쉼터 **김균섭 소장**, 대전여자단기청소년쉼터 **이경희 소장**, 민족사관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장부환 센터장**,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영숙 센터장**,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김영아 센터장**, 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박성현 센터장**, 대전광역시이동일시청소년쉼터 **이계석소장**, 대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이순복 소장**(이상 12명)

제2절 주요 논의 주제

1. 각 기관별 교육 현황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의 경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매년 14,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2차시) 및 특성화고등학교 노동동아리(10~17차시 활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대면교육 뿐 아니라 비대면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노동인권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진행 중에 있다. 대전은 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70회 가량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은 교육기회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전남자단기청소년쉼터의 경우 청

소년공방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공방에서 진행하는 인턴십에 참여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등의 사전프로그램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 중하고 있다. 인턴십 참여청소년들이 입소청소년들이 대부분이라 위기청소년으로의 전반적 확대는 미흡한 실정이다.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22년 발족한 대전광역시청소년근로보호지원단의 경우 올 10월부터 노동인권교육을 특강형태와 집단상담의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성화고에서 청소년멘토를 위촉하여 현장또래상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매 분기별 노동참여교육(4단계프로그램)을 진행중이며, 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매 분기별 노동참여교육(4단계프로그램)과 더불어 채용안정 및 노동권리보장 위한 교육진행과 대학생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노동관련 법률지원과 함께 실질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그냥공방을 운영 중이나 성착취피해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가 깊은 강사섭외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그 밖의 기관에서는 기본소양교육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의 청소년공방인 만들래와 그냥공방 등에서 진행하는 인턴십에 참여하며 실질적인 노동관련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2. 일자리 관련 정보 홍보방법

각 기관별 일자리 관련 정보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홍보방법에 대해 의견이 있었으며, 더불어 일경험과 직업탐색의 기회가 전무하여 진로체험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통합지원이 가능한 공적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3. 청소년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청소년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문제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문제와 노동인권감수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청소년 당사자의 심리적 인파워먼트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4. 지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일자리 확보 방안

지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들 청소년들을 위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 공동작업장이 필요하다. 가장 낮은 단계의 작업부터 시작해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일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청소년들의 빚문제에 대한 방안

사회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가중됨에 따라 부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서울 서북지재단과 대전신용재단등의 도움을 받을 수있으며, 그밖에 민생네트워크 새벽,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있다. 더불어 이러한 지원과 정책등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 하여 위기청소년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한다.

6. 대전광역시 위기청소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요하게 논의해야할 주제

1) 청소년 일자리 전담기관 체계필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안정적 일자리를 갖기 전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등의 중간지대가 필요하다. 또한 인력과 예산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등의 행정적 지원과 공공의 성격을 가진 노동관련 기구 운영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지원센터를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육역량 강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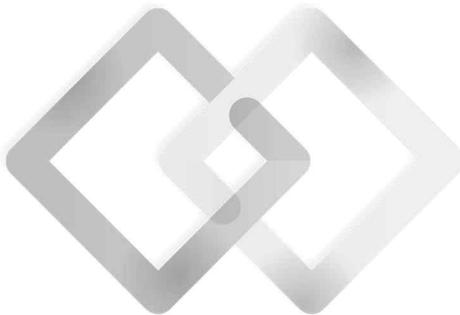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기회 자체가 부족한 만큼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수준에서의 확대 방안으로써, 기관별 자체 강사양성교육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대전지역 위기청소년의 근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제5장 결론



제5장 결론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과 자립은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 청소년 노동을 특화시켜 전 사회적 관심을 끌어모아 지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직업 상담·교육부터 시작해 청소년에게 알맞은 일자리 제공 및 알선은 물론 청소년에게 행해지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우선 청소년들의 일은 대부분 단순노동에 그치고 있으며, 일하는 기간도 3개월 미만인 57%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짧다. 특별한 기술이 없기에 가장 원하는 일자리도 패스트푸드점, 카페, 편의점, PC방 등으로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비율은 약 87%에 달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임금은 낮을 수밖에 없고, 생활비를 자급해야 하는 청소년이 약 15%에 달하는 상태에서 수입을 위해서는 불법·탈법적인 일에 노출된 청소년이 약 9%에 달하며, 빚을 진 청소년이 약 14%이고, 신용불량자도 약 8%에 이르고 있다. 이를 볼 때 전문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직업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처음 일을 경험하는 나이가 15세~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약 60%에 달하는 것을 보면 보기보다 상당히 이른 나이에 일을 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청소년에 대한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청소년들의 노동법과 노동 상식을 묻는 문제에 대해 10문제 중 6문제 이하를 맞춘 청소년이 약 71%이며 심지어는 한 문제도 못 맞춘 청소년도 3%나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꼽는 구직 시의 어려움으로는 근로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음, 직장 경험 부족, 기술·자격 부족, 취업정보 부족 등을 들고 있으며, 미성년자로서 부모 동의서를 낼 수 없어서라는 경우도 36명(17.3%)이 나온 것을 보면,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청소년 친화적 일자리를 개발하는 한편 미성년자의 구직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도 보인다. 또 이들 청소년의 구직 경로를 보면 약 66%가 온라인 앱을 이용하고 있는데, 온라인 앱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4대 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속되지 않은 업무 수행, 임금 체불 등의 청소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하며, 심지어는 임금을 받지 못함, 성희롱과 성폭력 등도 약 10%에 달하고 있다. 그 외에도 18세 미만 청소년이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약 10%이며, 법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도 무려 약 18%에 달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대처 방안이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 참고 계속 일했다 등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우가 약 65%에 달한다는 사실이고, 고용노동청, 경찰, 상담소 등 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5.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를 볼 때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적극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상의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에 대한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상담을 강화하고 공신력이 있는 노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동법과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벌 및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그리고 청소년의 노동 가능 연령의 조정과 근로동의 요건의 완화 등의 법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위기청소년의 경우 지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직업이나 진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법과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 역할은 중장기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직업 및 진로 상담,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부당노동행위의 감시와 노동 현장의 고충처리 상담, 청소년 친화적 일자리 발굴 및 알선과 인턴십 개발, 청소년 일자리 정보에 대한 공신력 제고, 청소년 노동현장에 대한 아웃리치, 위기청소년의 직업 경험을 위한 청소년 공동작업장 운영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 전반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담회에서도 똑같이 논의된 바가 있으며, 집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빛 문제에 대한 대처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강화를 위한 강사 역량 개발 및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일자리 통합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의를 마무리 지은 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모든 논의를 종합하자면, 선행연구와 전문가 집담회,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도 다 같이 최종적으로 논의된 것이 위기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위기청소년의 특성상 단순 일자리 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유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것은 위기청소년의 경우 안정적인 생

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리정서적인 측면과 학습 인지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다 같이 고려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일에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일과 노동인권에 대한 지원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공공체계 안에서 청소년 공동작업장을 포함한 통합적인 청소년 일자리지원센터 설립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이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안정적 일자리 지원체계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제정이 중요하게 제기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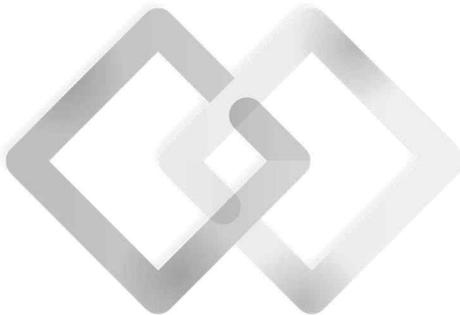
- 강경균 외(2019).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수민(2021).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김형주(2019).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 배건이(2021).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 청소년 노동을 중심으로」. 『글로벌 법제 전략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안선영 외(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여정 외(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상진(2021).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국제문화기술진흥원.
- 최영진(2018). 「연소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법학회.
- 황진구 외(2017).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 <https://www.elis.go.kr>

2022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대전지역 위기청소년의 근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부록



청소년 일(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본 설문지는 2022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안정적 일자리(아르바이트)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청소년 여러분의 일 경험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일 또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설문 결과는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지원을 위한 대안 및 정책을 생산하는 근거로 사용할 것이며, 본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의 : 대전광역시이동일시청소년쉼터, 이계석(010-5454-4413)

※ 조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가급적 청소년들과 직접 대면해서 인터뷰하면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당신의 성별은 ? : ① 남() ② 여()

2. 당신의 출생 연월은 ? ()년 ()월

3. 당신의 학력은 어떻습니까?

- ① 초등학교 졸 ② 중학교 중퇴 ③ 중학교 졸 ④ 고등학교 중퇴
⑤ 고등학교 졸 ⑥ 대학교 재학

4. 당신은 현재 가출 중입니까? ① 예 ② 아니다.

5. 당신이 최초로 일(아르바이트)을 시작했던 나이는? 만 () 살

6. 당신이 일(아르바이트)을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해당되는 곳은 다 체크해 주세요)

일해본 곳이나 내용	응답	일해본 곳이나 내용	응답
1) 전단지 배포		2) 편의점 점원	
3) 패스트푸드점, 카페 점원		4) 음식점(주문, 서빙, 설거지 등)	
5) 오토바이 배달(음식)		6) PC방 점원	
7) 건설현장 노동		8) 택배 물류	
9) 퀵서비스		10) 상품 판매(옷, 휴대폰 등)	
11) 놀이공원(이벤트) 도우미		12) 주유소	
13) 사무업무 보조		14) 공장 노동	
15) 신문, 우유 배달		16) 노래방 점원	
17) 노래방 외 유흥업소		18) 미용실	
19) 기타(구체적으로) ()			

7. 당신이 제일 일하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1~3순위로 작성)

일해본 곳이나 내용	응답	일해본 곳이나 내용	응답
1) 전단지 배포		2) 편의점 점원	
3) 패스트푸드점, 카페 점원		4) 음식점(주문, 서빙, 설거지 등)	
5) 오토바이 배달(음식)		6) PC방 점원	
7) 건설현장 노동		8) 택배 물류	
9) 퀵서비스		10) 상품 판매(옷, 휴대폰 등)	
11) 놀이공원(이벤트) 도우미		12) 주유소	

13) 사무업무 보조		14) 공장 노동	
15) 신문, 우유 배달		16) 노래방 점원	
17) 노래방 외 유흥업소		18) 미용실	
19) 기타(구체적으로) ()			

8. 당신의 아르바이트 구직 방법 중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 ① 온라인, 앱 (알바천국 등) ② 택배 전문업체 ③ 친구, 가족 등 지인 소개
 ④ 워크넷 ⑤ 직업소개소 ⑥ 업소의 구인 벽보 ⑦ 교차로 등의 무료 홍보지
 ⑧ 직접 찾아다님 ⑨ 기타()

9. 당신이 일(아르바이트)을 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용돈을 벌기 위해서 ② 원하는 물품을 사기 위해서
 ③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④ 학비를 벌기 위해서
 ⑤ 유흥비가 부족해서 ⑥ 호기심, 또는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⑦ 주변의 권유로 ⑧ 기타 ()

10. 구직할 때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돈 ② 시간적 여유 ③ 근무 환경
 ④ 집과의 거리 ⑤ 일이 쉽고 편함 ⑥ 무조건 구해지는대로
 ⑦ 부모의 허락 여부 ⑧ 숙박 가능 여부

11. 당신은 불법이나 탈법적인 일(아르바이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 미성년자인데 PC방, 유흥업소 등 미성년자 고용 금지업소에서 일한 경우
스팸문자 발송, 보이스피싱 금액 회수,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 알바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2. 현재 당신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합니까?

문 항	답 변	
1) 나는 현재 갚아야 할 빚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금액()원
2) 나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금액()원
3) 나는 현재 신용불량이거나 과거에 신용불량 경험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13. 구직을 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미성년자인데 (부모)동의서를 낼 수 없어서	①	②	③	④
2) 보수가 적어서	①	②	③	④
3) 학력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4) 직장 경험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5) 근로 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①	②	③	④
6) 기술, 자격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7) 건강이 안 좋아서	①	②	③	④
8) 자신의 적성을 잘 몰라서	①	②	③	④
9) 취업정보가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10) 기타()	①	②	③	④

14. 다음의 내용들에 대해 맞고 틀리는 것을 구분하세요.

질 문	맞다	틀다	모르겠다
1)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서류는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이다.	①	②	③
2) 다음 중 18세 미만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종에는 만화방, PC방(종합게임장)이 있다.	①	②	③
3)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이다.	①	②	③
4) 1주일에 2일 또는 3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그 근로시간을 합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5) 1주일에 15시간씩만 근무해도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6) 일 시작 전에 청소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①	②	③
7)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다.	①	②	③
8)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3일 이상 지각을 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9)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10) 노동문제와 관련해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대표 신고전화는 1388이다.	①	②	③

15. 당신이 현재 하고 있거나 최근에 경험한 일(아르바이트)의 주된 근로 형태는?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전일 근무) ③ 비정규직(파트타임)

16. 당신이 현재 하고 있거나 최근에 경험한 일의 평균 일일 근로시간은?

(시부터 ~ 시까지, 총 시간)

17. 당신이 현재 하고 있거나 최근에 경험한 일의 평균적인 일주일 총 근로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시간)

18. 일(아르바이트)을 한 경우 한 곳에서 일한 평균 근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주 미만 ② 1개월 미만 ③ 1개월~3개월 미만
④ 3개월~6개월 미만 ⑤ 6개월~1년 미만 ⑥ 1년 이상

19. 당신이 가장 최근에 경험한 일의 시간당 급여는 얼마입니까? 2020년도 이후 일(아르바이트) 경험자로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받은 임금을 적어주세요.

1) ()원, ()년

20. 2020년 이후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받은 가장 낮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은 얼마였습니까?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받은 임금을 적어주세요.

1) ()원, ()년

21. 아르바이트시 월 평균소득금액(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 ① 50만원 이하 ② 100만원 이하 ③ 150만원 이하
④ 200만원 이하 ⑤ 200만원 이상

22. 한달을 생활하는데 얼마만큼의 생활비가 꼭 필요할까요?

- ① 50만원 이상 ② 100만원 이상 ③ 150만원 이상
④ 200만원 이상 ⑤ 300만원 이상

29-1.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경우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받은 곳이 여러 곳이면 모두 V 표시해 주세요.

구 분	응답
1) 청소년쉼터	
2) 청소년회복지원시설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4) 상담복지센터(1388)	
5) 학교	
6) 경찰서	
7) 대전시노동권익센터	
8) 고용노동청(고용복지센터)	
9) 법무부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10) 구청, 시청	
11) 기타()	

고맙습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현장연구 2022-5]

**대전지역 위기청소년의 근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발 행 일 : 2022년 12월

발 행 인 : 김 인 식

발 행 처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3층(우:34917)

전 화 : 042-331-8901

팩 스 : 042-331-8924

홈페이지 : <http://www.daejeon.pass.or.kr>

인 쇄 처 : (주)유선애드플랜

ISBN 979-11-92238-11-1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있습니다.
